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2-12

재난방송 관련 법·제도 재정비 방안 연구
(A study on reform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disaster broadcasting)

송종현/이연/최성종/이현지/변윤관

2022. 12

연구기관 :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이 보고서는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 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재난방송 관련 법·제도 재정비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연구 기관 :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총괄책임자 : 송종현 교수 수

참여연구자 : 이연명 교수

최성종 교수 수

이현지 박사

변윤관 연구원

목 차

제1장 재난과 재난방송	1
제1절 재난과 피해	1
제2절 재난과 재난방송	11
제3절 기존 과제 현황	15
제2장 국외 재난방송 관련 법률	21
제1절 미국	21
제2절 일본	32
제3장 재난방송의 정의와 의무규정 및 공적 책무	45
제1절 재난방송의 정의	45
제2절 재난방송의 이념 및 목적	48
제3절 재난방송의 기능 및 역할	51
제4절 재난방송의 법적 근거 및 대상	54
제4장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한 법·제도적 재정비	59
제1절 재난방송과 관련된 법률 분석	59
제2절 재난방송 등 표준 매뉴얼	64
제3절 법·제도적 재정비의 필요성	66
제5장 재난방송협의회 및 재난방송 평가 개선방안	67

제1절 효율적인 재난방송과 재난방송협의회 구축	67
제2절 재난방송 평가방법과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 제고	71
제6장 재난방송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	77
제1절 재난방송과 기술 표준	77
제2절 전문인 양성과 국제교류	95
제7장 재난방송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1
제1절 재난방송 법률안의 구성요소	101
제2절 재난방송 법률안의 세부내용	103
제3절 재난방송에 관한 특별법(안)	132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안	163
참고문헌	165

표 목 차

<표 1-1>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5
<표 3-1> 재난보도준칙 제2장 및 제3장	57
<표 4-1> 재난방송 등 표준 매뉴얼의 구성	65
<표 5-1> 지역재난방송협의회 관할구역 업무 분장	69
<표 5-2> 2021년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배점 방식	71
<표 5-3> 재난방송 의무대상사업자 일람표 (2020년 9월 기준)	72
<표 5-4> 재난방송 의무대상 사업자 분류표	74
<표 5-5> 재난방송 의무대상 사업자 분류표	76
<표 7-1> 제1조(목적)	103
<표 7-2> 제2조(정의)	103
<표 7-3> 제3조(재난방송등의 공공성과 재난취약계층의 권익보호)	104
<표 7-4> 제4조(재난방송등 업무의 총괄·조정)	105
<표 7-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05
<표 7-6> 제6조(재난방송준칙의 제정)	105
<표 7-7> 제7조(재난방송등의 의무)	106
<표 7-8> 제8조(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106
<표 7-9> 제8조의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107
<표 7-10> 제9조(재난방송등의 실시기준)	108
<표 7-11> 제9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110
<표 7-12> 제10조(재난방송등의 관리)	111
<표 7-13> 제10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4항 이하)	111
<표 7-14> 제11조(재난주관방송사)	111
<표 7-15> 제11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	112
<표 7-16>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113

<표 7-17> 제13조(중앙재난방송협의회 대책본부)	113
<표 7-18> 제14조(지역재난방송협의회 지역대책본부)	114
<표 7-19> 제15조(재난방송 상황실 등)	114
<표 7-20> 제15조 참조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114
<표 7-21> 제16조(재난방송 예·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등)	115
<표 7-22> 제16조 참조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115
<표 7-23> 제17조(재난방송과 방송재난의 안전관리 및 예산지원 사전협의 등)	117
<표 7-24> 제17조 참조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	117
<표 7-25> 제18조(재난방송과 방송재난의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118
<표 7-26> 제18조 참조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	118
<표 7-27>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방송과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119
<표 7-28> 제19조 참조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	119
<표 7-29> 제20조(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20
<표 7-30> 제20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121
<표 7-31> 제21조(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22
<표 7-32> 제21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	122
<표 7-33> 제22조(방송재난관리계획의 이행)	122
<표 7-34> 제22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	123
<표 7-35> 제23조(방송재난의 대비)	123
<표 7-36> 제23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7조)	123
<표 7-37> 제24조(방송재난의 보고)	124
<표 7-38> 제24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8조)	124
<표 7-39> 제25조(방송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124
<표 7-40> 제25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9조의2)	124
<표 7-41> 제26조(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125
<표 7-42> 제26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	125
<표 7-43> 제27조(재난방송등의 송출 및 운용 등)	126

<표 7-44> 제28조(재난방송등의 기술적 고도화와 진흥정책)	126
<표 7-45> 제29조(재난방송등의 표준화)	126
<표 7-46> 제30조(재난방송 연구기관의 설립 및 연구 단체의 지원)	127
<표 7-47> 제30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8조)	127
<표 7-48> 제31조(방송재난에 관한 피해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127
<표 7-49> 제31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1조)	128
<표 7-50> 제32조(재난전문채널의 운영)	128
<표 7-51> 제33조(온라인 재난정보 제공)	128
<표 7-52> 제34조(재난방송 종합계획의 수립)	129
<표 7-53> 제35조(재난방송과 국제협력)	129
<표 7-54> 제36조(재난방송과 납북협력)	129
<표 7-55> 제37조(자료의 제출)	129
<표 7-56> 제37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2조)	129
<표 7-57> 제38조(과태료)	130
<표 7-58> 제38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8조)	130
<표 7-59> <별표1> 재난방송등의 실시형식 결정 시 고려사항 예시	162

그 림 목 차

[그림 1-1] 2021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현황, 원인별(왼쪽), 지역별(오른쪽) ...	3
[그림 1-2] 2021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 현황, 원인별(왼쪽), 지역별(오른쪽) ...	3
[그림 1-3] 2021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현황	4
[그림 1-4] 최근 10년간 사회 재난 발생 현황(단위: 건)	5
[그림 1-5] 최근 10년간 사회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현황(단위: 명)	6
[그림 1-6] 최근 10년간 사회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 현황(단위: 억원)	6
[그림 1-7] 2020년, 2021년 주요 재난 발생 건수	7
[그림 1-8] 코로나 사망자 수	7
[그림 1-9] 최근 10년간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발생 현황	8
[그림 1-10] 최근 10년간 산불 재난 발생 현황	8
[그림 1-11] 최근 10년간 가축 질병 발생 현황	9
[그림 1-12] 최근 10년간 해양선박 사고 발생 현황	10
[그림 1-13] IPAWS 아키텍처	12
[그림 1-14] L-Alert 아키텍처	13
[그림 1-15] 재난방송 실시 체계도	14
[그림 3-1] 재난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49
[그림 3-2] 재난방송의 기능	51
[그림 6-1] 한국산업표준 표준화 절차	82
[그림 6-2] TTA 표준화 절차	84
[그림 6-3]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 Part 3: 시스템즈’ 표준 정보	85
[그림 6-4]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 재난경보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정보	86
[그림 6-5] ‘지상파 UHD 기반 자주방송용 재난정보서비스 구현 가이드’ 표준 정보	87
[그림 6-6] ‘전용수신기를 위한 지상파 UHD 재난정보서비스 구현 가이드’ 표준 정보	88
[그림 6-7]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T-DMB): 자동인지 재난방송 서비스’ 표준	

정보	89
[그림 6-8]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B) 재난경보방송 수신기 표준적합성 시험’ 표준 정보	90
[그림 6-9] ‘지진 대응을 위한 긴급 재난방송 자막 표출 방법’ 표준 정보	91
[그림 6-10] ‘청각장애인용 재난 경보 텍스트그램 요구사항 및 표출 규격’ 표준 정보	92

요약문

1. 제목

- 재난방송 관련 법·제도 재정비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북한의 ICBM 발사, 강원 삼척 울진 등의 대형 산불, 광주 아이파크의 붕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재난 및 민방공 분야의 상황이 긴박해지고 있다. 또한, 2019년 코로나 19, 국지적인 폭염, 폭우, 미세먼지 빈발 등 대형재난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빈발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 <2020년 이상 기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해 호우와 태풍에 의한 재산피해만 약 1조 2585억 원에 이를 정도로 재산피해 규모가 점점 대형화 되고 있다. 나아가, 법과 제도 등의 미비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재난방송의 정의와 역할, 의무규정 등이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체계화 및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연구 구성 및 범위

- 재난방송의 정의·역할·용어 등에 대한 개념 정립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 등 관련 법령 검토 및 재정비 방안 모색
- 그 외 「현법」, 「방송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상법」, 「자연재해 대책법」, 「지진재해대책 특별법」, 「소방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림보호법」, 「민방위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등에 흩어져 있는 법안의 관련부분 발

췌 및 재정비 방안 제시

- 종래의 재난방송의 정성과 정량적 평가제도 개선방안 제시
- 재난방송 송출 방식별(특보, 훌림자막) 인정기준, 라디오방송의 동일·유사 통보문 통합 송출 및 핵심내용 송출 기준 제도화 등 개정안 마련
- 종래의방송사 간 협력 및 역할 조정, 중소방송사 등 재난방송 관련 물적·인적·기술적 지원정책 제안
- 방송사업자와 정책당국 포괄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방안 도출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재난방송에 관한 특별법(안) 제시
- 국외 재난방송 관련 법률 분석
- 재난방송의 정의 정립
-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한 법·제도적 재정비
- 재난방송협의회 및 재난방송 평가 개선방안
- 재난방송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

5. 정책적 활용 내용

- 재난방송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 개정안 마련
-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및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정책적 연계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방송 체계 정비
- 재난방송에 관한 특별법(안) 작성

6. 기대효과

-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를 통한 국민 신뢰도 향상
- 방송 환경에 적합한 재난방송 선진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SUMMARY

I. Title

- A study on reform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disaster broadcasting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Research

- Due to the frequent occurrence of large-scale disasters such as COVID-19 in 2019, urgent measures are needed.
- It is time to systematize and reestablish the legal system so that the definition, role, and mandatory regulations of disaster broadcasting can be clearly defined, which will result in efficient that they can respond promptly in the event of a disaster.

III. Contents and Scope of Research

-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definition, role and terminology of disaster broadcasting
- Review related laws and seek reorganization plans
-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valuation system for disaster broadcasting, standard manual for disaster broadcasting and presentation of improvement plans
- Preparation of notification amendment
- Suggestions for material, human, and technical support policies related to disaster broadcasting
- Deriving a reasonable and effective plan that covers broadcasters and policy authorities

IV. Research Results

- Proposal of a special act on disaster broadcasting
- Establishment of definition of disaster broadcasting
- Legal and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for efficient disaster broadcasting
-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 and disaster broadcasting evaluation improvement plan
-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for advanced disaster broadcasting

V. Future Policy Implications

- Prepare a reasonable and efficient law and amendment plan for the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on disaster broadcasting
- Reorganization of the disaster broadcasting system to improve the lack of policy linkage between the Central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 and the Regional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
- Draft of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and support of disaster broadcasting

V. Expectations

- Improving public satisfaction through effective disaster broadcasting
- Lay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advancing disaster broadcasting suitable for the broadcasting environment

CONTENTS

- Chapter 1. Disasters and disaster broadcasting**
- Chapter 2. Disaster broadcasting regulations of other countries**
- Chapter 3. Definition of disaster broadcasting, mandatory regulations and public responsibilities**
- Chapter 4. Legal and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for efficiency of disaster broadcasting**
- Chapter 5.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 and disaster broadcasting evaluation improvement plan**
- Chapter 6.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for advanced disaster broadcasting**
- Chapter 7. Special act on disaster broadcasting**
- Chapter 8. Conclusions and policy suggestions**

References

제1장 재난과 재난방송

이 장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어떠한지, 재난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재난경보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재난방송관련 법·제도 재정비를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기존연구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다루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제1절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해 서술한다. 특히,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축된 재난경보시스템에 대해 서술한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의 경보시스템의 지향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방송의 법·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서술한다.

제1절 재난과 피해

1.1.1. 자연재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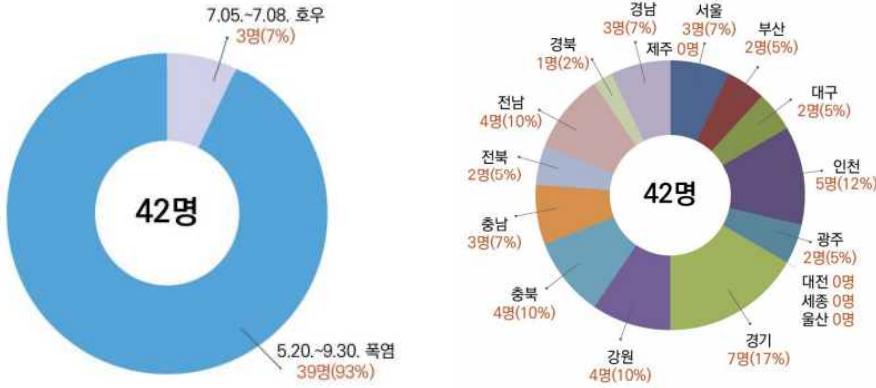
기상청에서 발표한 2021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의하면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상기후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큰 피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1년 1~2월 동안에 동아시아, 북미, 유럽에서 기록적인 한파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미국은 본토의 73%가 눈으로 덮이고 폭설로 인해 최소 60여 명이 사망하고 약 1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3월에는 호주 동남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6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여 4만 명 이상이 대피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7월에는 독일과 벨기에에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가 발생하여 200여 명의 사망자와 약 6조8천억 상당의 인프라 피해가 발생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장마철 종료 후에도 폭우가

1) 기상청(2022)의 <2021년 이상기후 보고서>와 행정안전부(2022a)의 <2021 재해연보>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내리면서, 중국의 허난성에서 시간당 202mm의 폭우로 인해 300여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한편, 7월에는 이상고온 현상도 발생하여 전 지구 기온이 142년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는데,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최고기온이 49.7°C이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초강력 토네이도의 발생으로 인해 100여 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아이다(Ida)가 미국 북동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약 100여 명의 인명 피해와 약 75조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상기후의 주요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지구 평균 기온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생하였다고 언급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매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북극 해빙 면적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해빙 면적이 평년보다 적은 경우에 인근 지역의 기온 상승이 유발되어 제트 기류의 범위가 바뀔 수 있는데, 동아시아까지 차가운 제트 기류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겨울철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눈 덮임이 평년보다 많으면 대륙이 급격하게 냉각되어 동아시아 지역에 겨울철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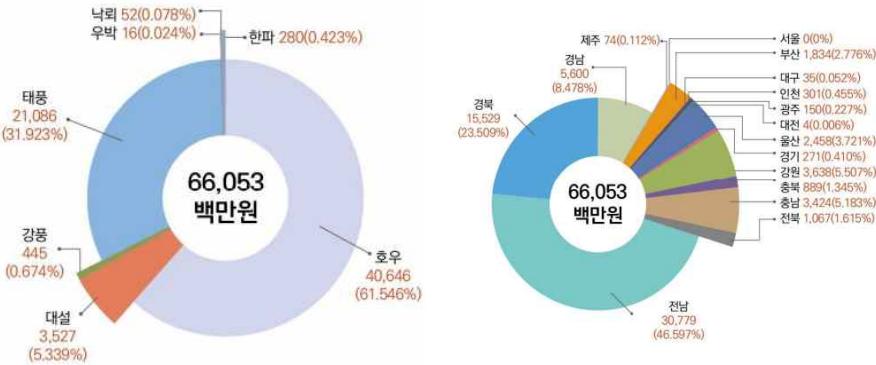
2021년 국내에서도 이상기후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총 42명이 사망했는데, 39명은 폭염이, 3명은 호우가 원인이었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2021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현황, 원인별(왼쪽), 지역별(오른쪽)

자료: 행정안전부(202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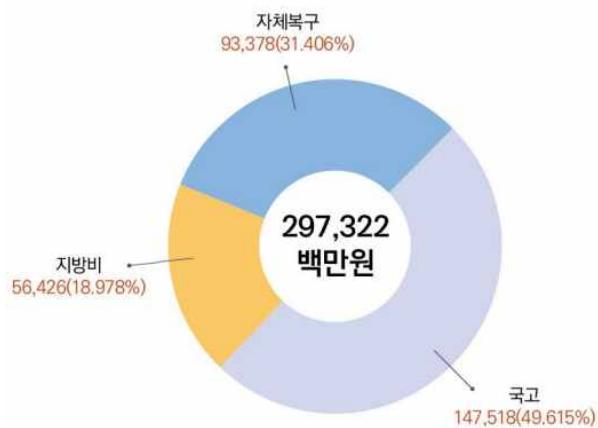
재산 피해는 총 66,053백만 원으로, 호우가 40,646백만 원, 태풍이 21,086백만 원, 대설이 3,527백만 원이었다. 이 외에 강풍, 낙뢰, 우박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2021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 현황, 원인별(왼쪽), 지역별(오른쪽)

자료: 행정안전부(2022a)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투입된 복구비는 총 297,322백만 원으로, 국고에서 147,518백만 원, 지방비에서 56,426백만 원, 그리고 자체복구로 93,378백만 원을 사용되었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2021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2022a)

최근 10년간의 인명 피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018년을 전후로 수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2018년부터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포함됨에 따라 해당 인명 피해도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2018~2021년 동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49명,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22명, 태풍·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1명,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146명으로 집계되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평균
호우	2	4	2	-	1	7	2	-	44	3	65	6.5
태풍	14	-	-	-	6	-	2	18	2	-	42	4.2
태풍·호우	-	-	-	-	-	-	1	-	-	-	1	0.1
대설	-	-	-	-	-	-	-	-	-	-	-	-
폭염	미 산 정						48	30	29	39	146	36.5
합계	16	4	2	0	7	7	53	48	75	42	254	25.4

※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포함됨에 따라 2018년 이후만 집계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48명)은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제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2019 ~ 2021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근거로 하여 작성

자료: 행정안전부(2022a)

1.1.2. 사회재난²⁾

2021년 국내에서 사회재난 발생 건수는 총 23건으로 인명 피해는 총 5,137명(사망 5,078명, 부상 50명, 실종 9명), 재산 피해는 약 6,76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1-4] 최근 10년간 사회 재난 발생 현황(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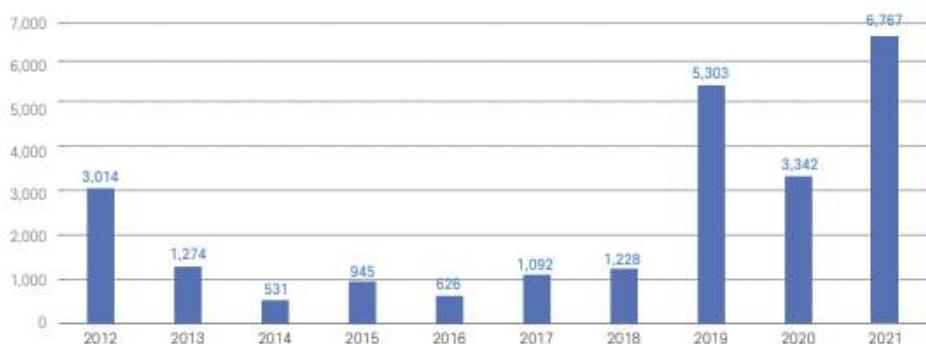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2022b)

2) 행정안전부(2022b), <2021 재난연감>을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1-5] 최근 10년간 사회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현황(단위: 명)

자료: 행정안전부(2022b)



[그림 1-6] 최근 10년간 사회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 현황(단위: 억원)

자료: 행정안전부(202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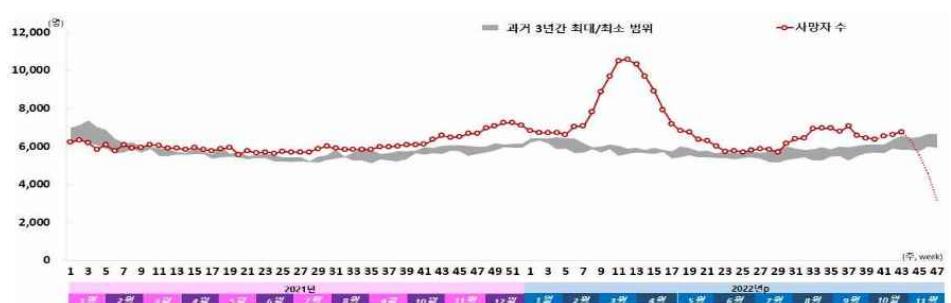
발생한 사회재난 총 23건 중 감염병이 1건, 산불이 2건,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가 7건, 가축 질병이 2건, 해양 선박 사고가 2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1건,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가 1건, 기타 유형이 6건을 차지했다([그림 1-7] 참조).



[그림 1-7] 2020년, 2021년 주요 재난 발생 건수

자료: 행정안전부(2022b)

감염병은 2020년 1월 20일에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316,899명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망자 수는 304,931명으로,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18.3%가, 전년 대비 19.6%가 증가하였다.([그림 1-8] 참조).



[그림 1-8] 코로나 사망자 수

자료: 통계청³⁾

3) 통계청(접속일: 2022.12.20.), URL: https://kosis.kr/covid/statistics_excessdeath.do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는 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9명(사망 1명, 부상 8명), 재산 피해는 약 5,17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그림 1-9] 참조).



[그림 1-9] 최근 10년간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발생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2022b)

산불 재난은 총 2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는 약 17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그림 1-10] 참조).



[그림 1-10] 최근 10년간 산불 재난 발생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202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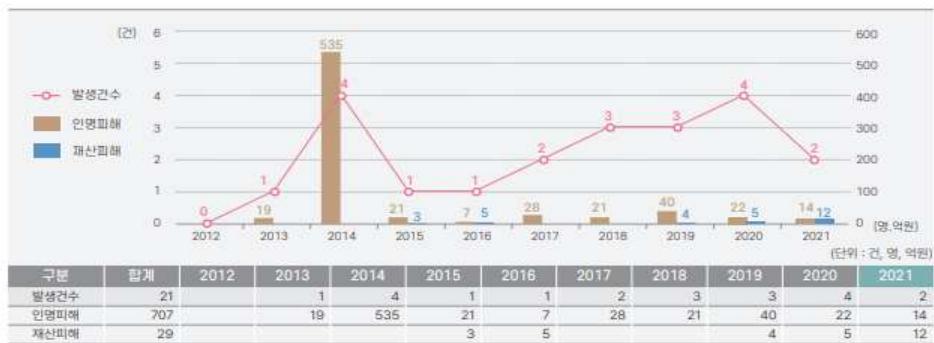
가축 질병은 특정 시기나 지역이 아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내 발생한 질병 현황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가축 피해는 닭·오리 828만수, 돼지 9,472두가 매몰되었다. 재산 피해는 약 1,29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그림 1-11] 참조).



[그림 1-11] 최근 10년간 가축 질병 발생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2022b)

해양선박 사고는 2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14명(사망 3명, 부상 2명, 실종 9명), 재산 피해는 약 1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그림 1-9] 참조).



[그림 1-12] 최근 10년간 해양선박 사고 발생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2022b)

한편,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충남 논산시 노성면 LCD 제조 공장 폭발 1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8명(사망 1명, 부상 7명)으로 집계되었다.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사고는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 1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17명(사망 9명, 부상 8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기타 6건은 표준매뉴얼 외의 재난 유형으로 강원 회성 주택화재(3.22.), 충남 태안 신진도항 선박 화재(3.23.), 전남 여수 한재사거리 교통사고(7.20.), 인천 서구 주택화재(8.21.), 경남 통영 모노레일 텔선사고(11.28.), 전남 여수 산단 사고(12.13.)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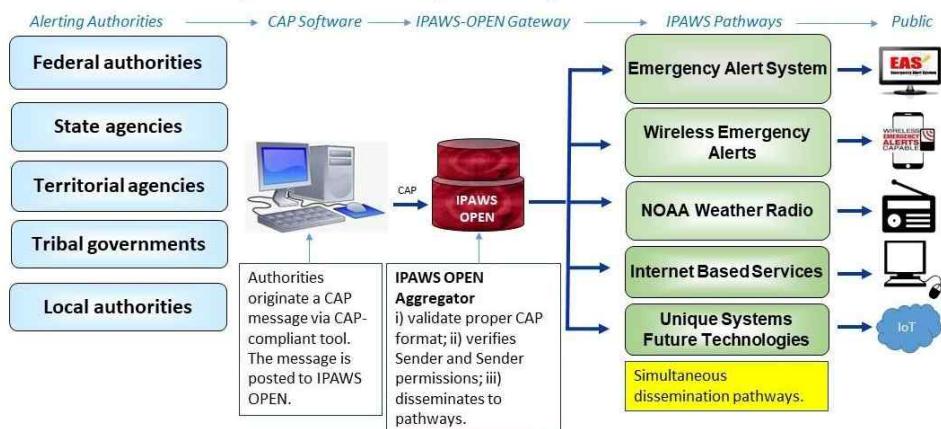
제2절 재난과 재난방송

재난의 다양화와 재난 규모의 대형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가들은 재난경보시스템과 같은 사회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방송망을 통해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EAS(Emergency Alert System)를 구축하였다. EAS 구축은 1950년대 냉전시대에 폭격기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한 공습 경보시스템(Control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필요성으로 시작되었다. 공습경보 시스템에는 라디오 방송국만 포함되어 있었고 국가 전역에 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공습 경보시스템은 경보 송출 스위치를 수동으로 제어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낙뢰와 같은 기상 조건에 의해 많은 오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후 공습보다 대륙 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안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공습 경보시스템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개선이 요구되었다. 1963년에 공습 경보시스템은 기술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며 EBS(Emergency Broadcast System)로 전환되었다. EBS에는 TV 방송국이 포함되고 경보음이 추가되었다. EBS는 TV에서 경보를 수신하고 경보음과 함께 표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EBS도 여전히 수동으로 제어하여 경보를 송출하기 때문에 시간 지연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1997년에 EBS는 시간 지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으로 경보를 송출할 수 있는 EAS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2005년 8월에 5등급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에 상륙하여 35만여 명이 대피하고 1,800여 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미국 정부는 기존의 경보 체계로는 이러한 커다란 재난에 대응하기에 부족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일에 착수했다. 미국 정부는 보다 신속하게 재난경보를 전달하기 위해 통합 재난경보시스템인 IPAWS(Integrated Public Alert & Warning System)를 개발하였다. IPAWS는 EAS와 같은 방송망 및 이동통신망 다양한 전달 경로를 통해 경보를 전달할 수 있다.

State, Territorial, Tribal, Local -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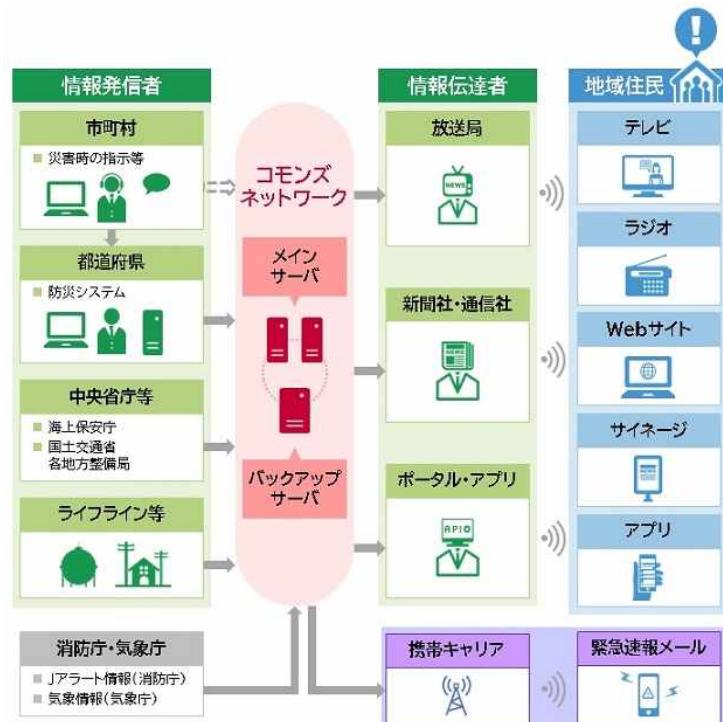
[그림 1-13] IPAWS 아키텍처

자료: FEMA 홈페이지⁴⁾

일본에서는 5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1995년 1월 한신 대지진(고베 대지진) 등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꾸준히 이루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 실험은 일본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⁵⁾. 이에 일본 정부는 지진 및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개발하였다. J-Alert은 방송망, 이동통신망 등 전달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J-Alert은 지방자치단체, 라이프 라인 사업자 등 참여자가 확대되고 L-Alert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재난 정보 인프라로서 운영되고 있다.

4)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홈페이지(접속일 2022.10.16.), URL: https://www.fema.gov/sites/default/files/2020-11/fema_ipaws-infographic_photo_11-17-2020.jpg

5) 세종연구소(2010),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그림 1-14] L-Alert 아키텍처

자료: 일본 멀티미디어 통신 재단 홈페이지⁶⁾

한국의 경우에도 사회 안전망으로써 재난방송을 활용하여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수집한 재난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 자동화 시스템(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해 방송사에서 재난방송이 실시되고 있다. 지진을 제외하고 재난방송 요청 주체는 행정안전부로 일원화 되어 있고⁷⁾, 31개의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방송의 형식으로 긴급경보방송과 특보방송 등의 형태가 있다. 긴급경보방송은

6) 일본 멀티미디어 통신 재단 홈페이지(접속일: 2022.10.16.), URL:
<https://www.fmmc.or.jp/commons/merit/3-2.html>

7) 지진은 기상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160개의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보도PP, SO, IPTV, 위성방송)가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 통보문에 대해 TV는 자막, 라디오는 음성, DMB는 팝업 형태로 표출한다. 특보방송은 지상파, 종편·보도PP 등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가 방송사 매뉴얼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특보 등의 형식으로 방송한다. 또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는 의무적으로 한국수어·외국어 자막을 제공하도록 하고 타 지상파 방송사, 종편·보도PP에게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1-15] 재난방송 실시 체계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21.08.)

한국도 1절 재난과 피해에서 언급했듯이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인명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경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난방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민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경보시스템이 잘 구축된 국가에 비해 한국은 아직 경보시스템의 통합이 미흡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다⁸⁾. 따라서 한국도 재난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미국의 IPAWS와 일본의 L-Alert 등과 같은 통합 경보시스템인 한국형 재난경보공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8) 민방위 경보시스템, 지역 경보시스템 등 재난방송 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개별적인 경보 시스템들도 운영되고 있다.

제3절 기존 과제 현황

현 재난방송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재정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진이 과거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뤘던 재난방송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다. 각 연구의 목적과 수행 의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의 배경, 목적, 내용, 법·제도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 2006년 <DMB를 활용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방안>⁹⁾

- (배경)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에 의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2004년 발생한 인도양 지진해일은 이 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연구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대형 재난 상황에서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경보서비스는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일환으로 TV방송 방식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었다. 디지털 전송 방식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보 전달이 수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난경보 전달수단이다. DMB는 2005년 12월 1일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서비스 초기부터 주관부처인 정보통신부는 DMB를 재난방송 전달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목적) 지상파 DMB 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방안과 기존 경보시스템 개선방안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 (내용) 주요 내용으로 DMB 기술 및 국내 DMB 서비스 현황 분석, 기존 국내 재난경보시스템에 추가될 DMB 재난경보시스템의 위상 파악, 국내 외 경보시스템 사례 조사가 있다.
- (법·제도관련 연구결과) 재난, 재난관리, 재난경보와 관련한 여러 용어 정의 시도하였으나 국내 재난경보를 규정하는 법·제도적 분석이 부족했다. DMB 재난경보를 민방위경보의 한 수단으로 제도화하고 구축사업

9) 소방방재청(2006), <DMB를 활용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방안>

을 통해 KBS를 비롯한 여러 방송국에 설치하였으나 통합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제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 2015년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한 정책 연구>¹⁰⁾

- (배경)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재난관리에 노력으로 방송 분야는 재난방송 개선에 많은 강조가 있었다. 국회는 터널, 지하 공간 같은 라디오, DMB 음영지역 개선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추가하였다. 조항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시행령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 재난방송 시스템 및 각 방송사의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하였다.
- (목적)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 (내용) 주요 내용으로 지하 공간이나 터널 내에 방송 신호 중계에 대한 다양한 행정규칙 조사, 미국의 EAS 분석을 참고하여 국내 재난방송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재난방송 의무 방송사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조항 신설이 있다.
- (법·제도 관련 연구결과) 정부에서 경보 발령 시 각 방송국이 수신한 재난경보를 방송국이 신속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국내 일부 방송국에서는 TTS를 활용하여 반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이나 미국의 EAS처럼 경보를 자동으로 방송 신호에 추가하는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은 미흡했다. 자동전달시스템의 표준화와 설치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 2016년, <지능맞춤형 통합경보시스템 연구 개발>¹¹⁾

- (배경) 민방위경보시스템은 주로 도심 지역에 구축되어있는데, 산간 계곡 같은 외곽 지역에 설치된 재난경보시스템으로 민방위경보를 전달하

10) 방송통신위원회(2015),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한 정책 연구>

11) 국민안전처(2016), <지능맞춤형 통합경보시스템 연구 개발>

면 효과적인 수신자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법적으로 민방위경보는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하기 때문에 민방위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난경보 전파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방위경보센터와 재난경보시스템이 연계하는 기술적 연구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 (목적) 지능적이고 수신자 맞춤형 경보 서비스를 위해 민방위경보시스템에서 재난경보시스템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경보시스템 연계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 (내용)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경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 제시, 경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메시지 표준 제안, 메시지 표준 기반 시스템 연계 기술 개발, 현장 시범서비스를 통한 경보시스템 연계 구축 및 검증이 있다.
- (법·제도 관련 연구결과) 보안 문제로 민방위경보시스템과 재난경보시스템 간의 연계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었다. 기존 민방위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경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법령 개정과 민방위경보센터와 재난정보통신과로 이원화된 조직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2017년 <지상파 UHD 방송 도입에 따른 전파 이용 효율화 방안 및 재난방송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¹²⁾

- (배경) 2017년 국내에서 지상파 UHD TV 방송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지상파 UHD 서비스 초기부터 재난경보 전달수단으로 국내 실정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 (목적) 지상파 UHD를 활용한 재난경보방송의 국내 도입 타당성 분석과 재난경보방송 시범서비스 실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 (내용)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 재난방송 특히 미국에서 진행 중인 ATSC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지상파 UHD 방송 도입에 따른 전파 이용 효율화 방안 및 재난방송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3.0 재난경보방송 사례 조사, ATSC 3.0 기술 중 재난경보방송과 관련한 기술 분석, UHD 전파 이용 효율화 방안이 있다.

- (법·제도 관련 연구결과) 재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법·제도 체계를 분석하여 재난방송의 의미를 수동적 재난정보 전달과 능동적 재난정보 전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재난방송 의무 방송사 재조정, 재난경보방송의 시스템화 및 법제화, 수신기 표준 적합성 인증, ATSC 3.0 재난방송을 위한 협의회 구성, 지상파 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을 제안했다.

○ 2018년, <지상파 UHD 방송을 활용한 재난방송 고도화 방안 연구>¹³⁾

- (배경) 2017년 지상파 UHD 방송 연구에 이어서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의 국내 정착을 위해 종합 전략 수립이 요구되었다. 주요 전략으로 재난경보방송 시범서비스를 통해 시스템 구축 확대를 기대했다.
- (목적) 재난경보방송 시범서비스 실시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내용)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시범사업 분야를 결정,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조 제시, 시스템 도입 방안, 법·제도 및 표준 개선방안이 있다.
- (법·제도 관련 연구결과) 재난경보 기술 기준,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 ATSC 3.0 휴대폰 수신기의 재난경보 지역맞춤형 정책, 일반 이용자 연구 정책을 제안했다.

○ 2020년, <국민 맞춤형 재난방송 실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¹⁴⁾

- (배경) 전통적인 재난방송은 한정된 정보 전달 매체와 한정된 전달 방식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화된 정보 전달 매체의 특성과 국민 여론 반영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했다.
- (목적) 다양한 전달 매체의 특성과 국민 여론을 수용하여 이에 적합한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지상파 UHD 방송을 활용한 재난방송 고도화 방안 연구>

14) 방송통신위원회(2020), <국민 맞춤형 재난방송 실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국민 맞춤형 재난방송 실시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내용) 주요 내용으로 국민 맞춤형 재난방송 실시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안 도출, 재난방송 방송평가 현황, 재난방송 실시 모니터링이 있다.
- (법·제도 관련 연구결과) 2차 주관방송사 추가 지정 검토, 지역 재난방송 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선안, 재난방송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방안, 국민 맞춤형 재난방송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제안이 있다.

제2장 국외 재난방송 관련 법률

이 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재난방송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 미국에서는 ‘대통령 행정명령’, ‘IPAWS 1차 계획서’, ‘IPAWS 2차 계획서’, ‘IPAWS 현대화법’, ‘IPAWS 현대화 자문위원회 보고서’, ‘EAS 연방 규칙’에 대해 서술한다. 제2절 일본에서는 ‘재해대책 기본법’, ‘방송법’,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기상업무법’, ‘국민보호법’ 등에 대해 서술한다.

제1절 미국¹⁵⁾

이 절은 미국의 IPAWS 개발 과정에서 주요하게 영향을 준 법·제도와 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서에 관해 설명한다. 관련 보고서는 대통령 행정명령 13407, IPAWS 계획서, IPAWS 현대화법, IPAWS 현대화 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가 있다. EAS는 방송망을 활용하여 재난경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IPAWS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전달 매체 중 EAS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2.1.1. 대통령 행정명령

2006년 6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407)으로 대국민 재난경보시스템 정책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의 첫 세 개 조에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제1조(정책)는 미국행정부가 유지해야 할 재난경보시스템의 요구사항들을 정의한다. 우선 재난경보시스템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미국 국민에게 효과적이고, 신뢰도 높고, 통합적이고, 유연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정의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재난경보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주/지방정부와 민간기구의 기능이 정의되어야

15)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민방위경보 전달 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작성된 IPAWS와 EAS 관련 법·제도의 내용을 기본으로 정리하였다.

한다.

다음으로, 제2조(국토안보부의 기능)에서는 국토보안부 장관이 재난경보시스템과 관련된 10개 항의 업무를 정의한다. 1항은 다음과 같은 국토보안부장의 주된 업무를 정의한다.

- (조사평가)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대국민 경보시스템의 조사/평가
- (CAP)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모든 통신수단으로 미국 시민에게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의 운영지침, 공통 경보 프로토콜, 표준, 용어의 정의
- (지역맞춤형) 지역/예상피해/개인적 취향에 기반을 둔 메시지의 전달 기능
- (취약계층) 장애인,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미국 시민에게 경보를 전달
- (유지관리) 경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통신사업자와의 협력
- (교육훈련) 경보시스템에 대한 교육, 훈련, 테스트
- (홍보) 중앙/지역정부, 민간 사업자, 미국 시민들에게 경보시스템의 기능 홍보, 경보 접근 방법, 경보 사용/대응 방법의 홍보, 교육
- (민관협력) 미국 정부와 민간기구 간 협력
- (EAS행정) EAS를 재난경보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관리
- (대통령경보) 어떠한 상황이라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들에게 경보를 전달하도록 보장

2항에서는 1항에 정의한 업무를 위해 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타 부처와의 협력으로 수행할 것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제3조(관련 부처의 의무)에서는 국토안보부 외의 미국 연방 행정기관의 의무를 정의한다. 나머지 5, 6, 7조는 부칙 및 경과에 관한 규정이다.

2.1.2. IPAWS 1차 계획서

대통령 행정명령 13407호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산하의 FEMA에서는 통합재난경보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IPAWS Program Office)를 설치하였다. 이 부서에서 2010년에 발간한 IPAWS 계획은 다음과 같은 비전, 미션, 전략적 목표를 제시한다. 이러한 계획서는 4년마다 갱신되고 있다.

- 비전(Vision): 미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timely) 예보 및 경보를 전달한다.
- 미션(Mission): 연방/지방 정부에게 다양한 전달 채널로 관할 지역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통합 경보서비스를 제공한다.
- 목표(Goal): 세 가지 전략적인 목표와 목표별 구체적인 하위 목표 (Objective)는 다음과 같다.
 - 목표 1: 경보를 위한 통합된 상호운영 체계 구축 및 관리
 - ✓ CAP, 관련 표준, 용어, 절차의 상호 운영성 점검
 - ✓ 모든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메시지 작성과 실현 가능한 모든 전달수단의 활용
 - 목표 2: 효과적인 경보 서비스 제공
 - ✓ 효과적인 경보 작성과 숙련된 시스템 사용을 위한 발령자 훈련
 - ✓ IPAWS 기능 검증과 가용성 검증을 위한 전국적인 테스트와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목표 3: IPAWS 인프라의 복원성(Resilience) 강화
 - ✓ 국가 인프라 보호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NIPP)에 따른 IPAWS 인프라의 리스크 관리
 - ✓ 민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포럼 구성 및 절차 정립

2.1.3. IPAWS 2차 계획서

2014년에는 IPAWS 2차 계획서가 미국 FEMA의 IPAWS 담당 부서에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서술하는 정책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407호에서 규정하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2014~2018년 동안에 수행할 정책을 위해 SWOT 분석 및 비전, 미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전(Vision): 미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활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경보 방법을 사용하여 시의적절한(timely) 대국민 경보를 제공한다.
- 미션(Mission): 연방/지방 정부에게 다양한 전달 채널로 관할 지역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통합 경보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기 목표(Long-Term Goal): 비전과 미션을 위해 5가지의 장기 목표와 목표별 하위 목표(Objective)를 설정한다.
 - 목표 1: 경보 서비스를 위해 상호 운영이 가능한 통합 환경을 구현, 유지관리, 진화시킨다.
 - ✓ IPAWS 활용과 대상을 확장하기 위한 기능을 개발한다.
 - ✓ 기존의 개발 활동을 운영 및 유지관리(Operation and Maintenance) 기능에 편입한다.
 - 목표 2: 더욱 효과적인 경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 IPAWS 브랜드 가치를 전국적인 비상경보의 표준으로 옮린다.
 - ✓ 모든 이해당사자 및 미국 시민에게 IPAWS를 홍보하고 이해시킨다.
 - ✓ 모든 이해당사자가 IPAWS를 채택하고 사용하게 한다.
 - 목표 3: IPAWS 인프라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한다.
 - ✓ IPAWS 기능 검증과 가용성 검증을 위한 전국적인 테스트와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 전국 테스트 동안 발굴한 재난 피해 경감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와 함께 작업

- ✓ 기존 IPAWS 인프라의 복원력 및 가용성을 개선을 위한 현대화
- ✓ IPAWS-OPEN의 99.9% 가용성을 위한 복원력 달성
- ✓ EAS와 IPAWS-OPEN의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수행
- ✓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이해당사자나 관련자를 추가
- 목표 4: 경보 서비스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개선한다.
 - ✓ IPAWS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의 개발 및 시행
 - ✓ 필요한 경우, 성능 평가에 결과를 통한 개선 사항 처리 방법 수립
 - ✓ 기술적 운영적 측면에서 재고하기 위한 처리 방안을 개발 및 시행
- 목표 5: 담당부서 직원의 업무 숙련도와 만족도를 높인다.
 - ✓ 직원의 장점을 이해하여 명확한 업무 정의
 - ✓ 통합 조직을 위한 협조 및 협력 개선

2.1.4. IPAWS 현대화법

2015년 「IPAWS 현대화법」(IPAWS Modernization Act of 2015)이 미국 연방의회에서 IPAWS 개선을 위해 제정되어 그 법적 지위가 상향되었다. 이 법은 다음 네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에 제526조(국가통합경보시스템 현대화)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가한다.
 - 일반 요구사항
 - 구현 요구사항
 - 시스템 요구사항
 - 시스템 사용의 제한

- 성능 보고서

○ 법률 시행 후 3년 동안 IPAWS 소위원회 설립 운영한다.

- 설치조건

- 위원회 구성: 정부/사업자/전문가

- 위원장

- 회의개최

- 위원 이외의 전문가 자문

- 권고사항 작성

- 보고서 작성

- 소위원회 해산

○ 추후 3년간(2016, 2017, 2018)의 연방정부 예산을 승인한다.

○ 이 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을 기술한다.

「현대화법」을 통해 「국토안보법」에 추가된 제526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PAWS 일반 요구사항

- (발령권자, 발령조건, 발령대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통령,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가 자연재난, 테러, 인적 재난, 공공안전 위협에 처한 위험지역의 주민에게 경보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 국가통합경보시스템 (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 IPAWS)를 현대화해야 한다.

- (경보 내용, 경보의 요구 조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경보를 전달하도록 IPAWS를 구현해야 한다.

○ IPAWS 구현 요구사항

- (운영/기술 표준) IPAWS를 위한 공통경보프로토콜, 표준, 전문용어, 운영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 (맞춤형 기능) IPAWS는, 지리적인 위치, 리스크, 다양한 통신 시스템 및

기술에 따라 전달 내용과 전달 방법을 조절하는 맞춤형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취약계층) 기술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IPAWS는 장애인, 특별한 접근 방법이 필요한 사람, 영어 능력 제한자 (역주: 영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의 경보를 제공해야 한다.
 - (사용자 교육) 이 시스템의 교육, 시험,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 ✓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¹⁶⁾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IPAWS를 포함해야 한다.
 - ✓ 연방, 주, 지역 공무원에게 공통 경보 프로토콜이 구현된 EAS(역주: 비상경보시스템(Emergency Alert System), 미국 방송망으로 대국민 경보를 전파하는 시스템)를 사용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NIMS(역주: 국가재난대응관리체계, 재난 시 다양한 관할지역(연방, 주, 도시), 담당 기능(소방, 경찰, 응급의료 등) 관리자들이 통합하여 대응하기 위한 운영체계)와 통합하여야 한다.
 - ✓ 적어도 3년마다 주기적으로 국가 통합 경보시스템의 전국적인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 (시스템 보안) 이 시스템은 강인성(Resilient) 및 보안성(Secure)을 확보해야 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견디어야 한다.
 - (대국민 홍보) 이 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 (민관 협력) 민간의 이해관계자, 연방/주/지역 정부 등과 협력해야 한다.
 - (IPAWS 소위원회와 협조) 본 법에 의해 설립되는 IPAWS 소위원회와 협조해야 하고, 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IPAWS 시스템 요구사항
- (다양한 채널) 방재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통신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16) FEMA의 상위 기관

- (차세대 기술) 직접적인 대국민 통신을 위해, 차세대 기술을 포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기술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 ✓ 재난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대부분의 주민(방문자, 관광객, 장애인, 접근성 기능이 필요한 자, 영어 능력 제한자)에게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 음영 지역에서의 수신율을 향상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재난대비 및 대응을 향상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 다양 주민에게 경보를 전달하기 위해, 중복되는 경보 전달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테스트 목적을 제외하고, 자연재난, 테러, 인적재난, 공공안전에 대한 메시지 외의 사용을 금지한다.
- 성능 평가 보고서
- 일반: 본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후로 2018년까지 매해마다 방재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성능평가보고서를 대국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 ✓ 방재청이 정하는 국가 통합 경보시스템의 성능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 ✓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 통합 경보시스템의 성능을 설명해야 한다. 국가 통합 경보시스템이 발령하는 경보를 위해 사용하는 기술의 유형, 장애인, 특수 접근자, 영어 능력 제한자에게 경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방재청이 수행한 교육, 시험, 훈련 및 이를 평가한 결과
 - ✓ 국가 통합 경보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도전적 과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기타 시스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찾아야 한다.

- ✓ 수립한 성능 목표대비 현 상황의 성취도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 의회: 방재청은 위에서 정한 보고서를 상원에서 운영하는 국가안보/행정 위원회 및 무역/과학/교통 위원회와 하원에서 운영하는 교통/기반시설 위원회 및 국가 안보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방재청은 국가 통합재난경보 시스템의 성능 보고서를 매년 대국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고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방재청은 국가 통합재난경보 시스템 소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시스템 관련 권고사항을 국가자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자문위원회는 이 권고안을 승인하여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 및 관련 의회의 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소위원회를 해산한다.
- 2016-2018 회계연도에서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한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공통경보프로토콜, 표준, 용어, 운영방법을 위한 권고안과 아래의 기능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 (수신자맞춤형) 지리적 위치, 리스크, 개인 선호도에 따라 통신 내용 및 통신 방법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맞춤형 기능
 - (취약계층1) 장애인, 제한적 영어능력자를 위한 경보 기능
 - (취약계층2) 비거주 방문자, 관광객을 포함하는 피해지역 대부분의 주민에게 경보를 전달하고, 외진 지역의 수신율을 높이는 설계
 - (다채널 전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수의 통신 기술 적용
 - (첨단기술전달) 대국민 전파를 위한 첨단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설계
 - (중복 전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 통신 매체 또는 수신기에 의존하지 않고 대부분의 주민에게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중복 경보 방법 제공
 - (지역재난관리)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재난 대비 대응 능력

2.1.5. IPAWS 현대화 자문위원회 보고서

「IPAWS 현대화법」의 소위원회 설립 및 운영 조항에 근거하여 2017년 8월 45명의

민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IPAWS 자문위원회가 출범하여 2018년 10월까지 15개월 간 활동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IPAWS 현대화법」에서 규정한 7개 항목의 기능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였다. 국가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보고서는 경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5개 그룹의 14개 권고사항, 권고사항 수행에 필요한 기한이 게재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령 역량 강화 방안: 효과적 경보를 위한 발령자의 경보 발령 역량 강화
 - 발령자 교육 내용 개발(중기 2, 3년)
 - 발령 기준 수립(중기)
 - 잠재적 발령자 고려(중기)
 - 발령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중기)
 - 헬프 데스크 설치(단기 1, 2년)
- 보급 확대를 위한 서비스 홍보 방안: 국민 및 연방의회 의원의 경보서비스에 대한 이해 향상
 - IPAWS 서비스(vs. 비 IPAWS 서비스) 차별화 중기)
 - 연방의회에 IPAWS 인식 제고(단기)
- 기술 최적화 방안: 기술의 최적화
 - 수용자 확산을 위한 콘텐츠 표준 제작(장기 3, 4년)
 - 소비자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단기 계획)
- 활용 가능 기술 조사: 활용할 수 있는 현재 및 미래 기술 조사
 - 기술 연구소 설치 및 차세대 매체 사업자와의 협력(중기)
 - 백업경보발령(단기)
 - CAP 링크를 위한 파일 호스팅(단기)
 - 효과적 경보를 위한 기술 가이드(단기)
- 전문가 조직 구성 방안: IPAWS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설치
 - 전문가 조직 구성(단기)

2.1.6. EAS 연방 규칙

미국의 EAS는 방송망을 통해 재난경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추후 IPAWS에 통합되어 운영 중이다. EAS의 운영 및 관련 장치의 기술적 규격에 대한 규정은 미국 FCC 연방 규칙으로 CFR Title 47 Part 11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AS 일반

- EAS 사용의 목적과 용어 설명
- EAS 운영 핸드북
- 전국 제어점(Control Point) 운영 지침서
- EAS 방송국의 역할 지정
- 주/지방정부의 EAS 운영 매뉴얼
- FCC가 사용하는 맵북(Mapbook) 규정

○ EAS 장비를 위한 요구조건

- EAS 프로토콜 및 메시지 포맷 정의
- EAS 인코더/디코더 요구사항
- 장비 인증 및 가용성 확인

○ EAS 참여 기관

- 전국 참여 기관 등 EAS 참여 기관 규정
- 오류/허위 전송 금지

○ EAS 운영절차

- EAS 메시지 코드와 경보음(attention signal) 전송 요구사항
- EAS 메시지 코드와 경보음 모니터링(monitoring) 요구사항
- 전국/주/지방 빌령 EAS 운영 절차
- 공통경보프로토콜인 CAP을 기반으로 하는 EAS 메시지 처리의 의무 조항

○ EAS 테스트 절차

제2절 일본

일본의 재난 관련 법령으로 가장 기본적인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은 「재해대책기본법」으로 1961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을 중심으로 관련된 법규로는 「방송법」,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국민보호법」, 「기상업무법」 「소방조직법」, 「수해방지법」 등의 재난관련 법률이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국가적인 위기나 대형 재난 발생 등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때는 언제라도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본법」 제6조와 「방송법」 제108조에는 재난정보전달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2.2.1. 재해대책 기본법¹⁷⁾

이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1959년 이세만의 태풍피해를 계기로 1961년에 제정된 재해 대책 관련 기본 법률이다. 이 기본법은 재난 대책 전체를 체계화해 종합적인 방재 대책 정비 및 대응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거치면서 2차에 걸쳐서 재해 대책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국토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의 복지 확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두고 있다.

17) 「電子政府の総合窓口 イーガブ「災害対策基本法」, 「内閣府/防災情報のページ「災害対策基本法」「内閣府/国会提出法案「災害対策基本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災害対策法制見直しの全体像」」

2.2.1.1. 재해대책기본법의 7가지 개요¹⁸⁾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서 사회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복지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방재에 관한 이념·책무

- 재해 대책의 기본 이념: 감재를 고려해야 하는 등의 재해 대책의 기본 이념
- 국가, 도·도·부·현, 시·읍·면, 지정 공공기관 등의 책무: 방재에 관한 계획의 작성·실시 및 상호 협력 등
- 주민 등의 책무: 자신의 재해에 대비해 생활필수품의 비축, 자발적인 방재 활동 참가 등

○ 방재에 관한 조직: 종합적 방재 행정의 정비·추진

- 국가: 중앙 방재 회의, 특정·비상·긴급 재해대책본부
- 도·도·부·현, 시·읍·면: 지방 방재 회의, 재해대책본부

○ 방재 계획: 계획적 방재 대책의 정비·추진

- 중앙 방재 회의: 방재 기본계획
- 지정 행정 기관·지정 공공기관: 방재 업무 계획
- 도·도·부·현, 시·읍·면: 지역 방재 계획
- 시·읍·면의 거주자 등: 지구 방재 계획

○ 재해 대책의 추진

- 재해 예방, 재해 응급 대책, 재해 복구라는 단계마다 각각 실시 책임 주체가 해야 할 역할이나 권한을 규정
- 시읍면장에 의한 일의적인 재해 응급 대책(피난 지시 등)의 실시, 대규모 재해시의 도·도·부·현, 지정 행정 기관에 의한 응급조치의 대행

○ 이재민 보호 대책

- 피난 행동 요 지원자 명부 및 개별 피난 계획의 사전 작성

18) 内閣府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접속일: 2022.09.01), <재해대책기본법의 개요>, URL: https://www.bousai.go.jp/taisaku/kihonhou/pdf/kihonhou_gaiyou.pdf

- 재해시의 피난소 피난 시설에 관련된 기준
- 재정 금융 조치
 - 법의 실시에 관련된 비용은 실시 책임자 부담
 - 극심한 재해에 관한 국가에 의한 재정상의 조치
- 재해 긴급사태
 - 재해 긴급사태의 포고 ⇒ 정부의 방침(대처 기본방침)의 내각회의의 결정
 - 긴급 조치(생활 필수 물자의 배급 등의 제한, 금전 채무의 지급 유예, 해외로부터의 지원 수용에 관련된 긴급 정부령의 제정, 특정 비상 재해법의 자동 발동 등)

2.2.1.2. 재해대책기본법 제2조(정의)

- 「재해대책기본법」 제2조제1항
 - 재해 폭풍, 희오리, 호우, 폭설, 홍수, 절벽 붕괴, 토석류, 해일, 지진, 쓰나미, 분화, 사태 및 그 외의 비정상인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 혹은 폭발과 그 피해의 정도가 이와 비슷한 정도로 정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재해대책기본법」 제2조제2항
 - 방재(防災),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확대를 막고 재해 복구에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재해대책기본법」 제2조제5항
 - 지정 공공기관 독립 행정 법인(독립 행정 법인 통칭 법(1999년 법률 제103호)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 행정 법인을 말한다.)¹⁹⁾
- 「재해대책 기본법」 제2조제7항
 - 방재계획 방재기본계획 및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을 말한다.

19) 일본 은행, 일본 적십자사, 일본방송협회 및 그 외의 공공적 기관 및 전기, 가스, 수송, 통신 및 그 외의 공익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재해대책기본법」 제2조제8항

- 방재기본계획 중앙방재회의가 작성하는 방재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 「재해대책기본법」 제2조제10항

- 지역 방재 계획 일정한 지역에 관련된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한다.

- 도·도·부·현의 지역방재계획은 도·도·부·현의 지역이므로, 해당 도·도·부·현의 도·도·부현 방재 회의가 작성하는 것이고, 시읍면 지역 방재계획은 시읍면의 지역이므로, 해당 시읍면의 시읍면 방재회의 또는 시읍면장이 작성하는 것이다. 도·도·부·현 상호간지역방재계획은 2개 이상 도·도·부·현의 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도·부현 방재회의 협의회서 장성한다. 시읍면상호지역간방재계획은 2개 이상 시읍면의 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시읍면방재회의 협의회가 작성한다.

○ 「재해대책기본법」 제2조제3항(지정행정기관), 제4항(지정 지방행정기관) 제5항(지정공공기관)

- 규정에 의하면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 기관(지정행정기관, 지정 지방행정기관, 지정공공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시 각각 직장 영역에 따라 책임을 완수할 의무를지고 있다.

○ 「재해대책기본법」 제2조제5항

- 지정공공기관 독립행정법인, 일본은행, 일본적십자사, 일본방송협회 그 외 공적기관 및 전기, 가스, 수송, 통신 기타 공익적 사업을 하는 영업 법인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 것.
- 지정 행정기관: 내각부,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 금융청, 소비자청, 총무성 등 정부 각 정부 부처
- 지정 지방행정기관: 오키나와 종합사무소, 관구경찰국, 종합통신국, 지방 후생국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부처
- 지정공공기관: 일본은행, 일본적십자사, 일본방송협회(NHK), 도쿄전력,

일본전신전화국(NTT 등)

○ 「재해대책기본법」 제6조(지정 공공기관 및 지정 지방공공기관의 책무)

- 지정 공공기관 및 지정 지방공공기관은 기본 이념에 따라 그 업무와 관련해서 방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법률 규정에 의해 국가, 도도부현(광역지자체) 및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방재계획 작성 및 실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업무에서도 해당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대해서 협력할 책무가 있다.
- 지정 공공기관 및 지정 지방공공기관은 그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익성에 비추어 각각의 업무를 통해서 방재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가스, 철도, 수도, 일본적십자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 NHK의 지정 공공기관 지정은 우리나라의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에 해당한다.

○ 「재해대책기본법」 제54조(발견자의 전달의무 등)

-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정상인 현상을 발견한 사람은 자체 없이 그 취지를 시정촌(시읍면)장, 또는 경찰관, 혹은 해상 보안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몇 사람이라도 전 항의 통보가 가장 신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관 또는 해상 보안관은 그 취지를 신속하게 시정촌(시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항 또는 전항의 통보를 받은 시·정·촌(시읍면)장은 지역 방재계획이 정해져 있는 대로 그 취지를 기상청, 그 외의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재해대책기본법」 제55조(도·도·부·현 지사의 통지 등)

- 도·도·부·현 지사는 법령 규정에 따라서 기상청 그 외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재해에 관한 예보, 혹은 경보의 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스스로

재해에 관한 경보를 했을 때는 법령 또는 지역 방재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재해의 사태 및 이것에 대해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관계지정 지방 행정기관의 장, 지정 지방 공공기관, 시·정·촌(시·읍·면) 장 그 외의 관계자에 대해 필요한 통지 또는 요청을 해야 한다.

○ 「재해대책기본법」 제56조(시정촌장의 경보전달 및 경고)

- 시정촌(시읍면)장은 법령 규정에 의해 재해에 관한 예보, 혹은 경보의 통지를 받았을 때, 스스로 재해에 관한 예보 혹은 경보를 알았을 경우, 법령규정에 따라 스스로 재해에 관한 경보를 했을 때, 또는 전조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역 방재계획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당 예보 혹은 경보 또는 통지와 관련되는 사항을 관계기관 및 주민, 그 밖에 관계가 있는 공사의 단체에 전달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촌(시·읍·면)장은 주민, 그 밖에 관계가 있는 공사의 단체에 대해 예상되는 재해의 사태 및 이에 따라서 취해야 할 피난을 위한 퇴거의 준비 그 외의 조치에 대해서 필요한 통지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 시·정·촌(시·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통지 또는 경고를 하면서, 요 배려자가 제6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피난을 위한 퇴거의 권고 또는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 원활히 피난을 위한 퇴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특히 배려해야 한다.

○ 「재해대책기본법」 제57조(경보전달 등을 위해 통신설비의 우선 이용 등)

- 전항 2조의 규정에 의해 통지, 요청, 전달 또는 경고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도·도·부·현지사, 또는 시정촌 장은 타 법률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령(政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를 먼저 이용한다. 또는 「유선전기통신법」 제3조제4항제4호(경찰사무, 소방사무, 항공보안사무, 해상보안사무, 기상업무, 철도사업, 궤도사업, 전기사업, 광업 등)에서 들고 있는 자가 설치한 유선전기통신설

비, 또는 무선설비를 사용하거나 또는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규정한 기간방송사업자에 방송을 요청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제공 사업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재해대책기본법」 제79조(통신 설비의 우선 사용권)

- 재해가 발생해서 응급조치에 필요한 통신 때문에 긴급하게 특별히 사용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정 행정 기관의 장, 혹은 지정 지방 행정 기관의 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 혹은 시읍면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전기통신 설비를 먼저 이용해, 또는 「유선전기통신법」 제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설치하는 유선 전기통신 설비, 혹은 무선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재해대책기본법」 제80조(지정 공공기관 등의 응급조치)

- 지정 공공기관 및 지정 지방 공공기관은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하려고 할 때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소장 업무에 관련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정 지방 행정 기관의 장, 도·도·부·현 지사 등 및 시·읍·면장 등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적확하고 원활히 행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지정 공공기관 및 지정 지방 공공기관은, 그 소장 업무에 관련된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정 행정 기관의 장, 혹은 지정 지방 행정 기관의 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 혹은 시읍면장에 대해 노무, 시설, 설비, 또는 물자의 확보에 대해서 응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응원이 요구된 지정 행정 기관의 장, 혹은 지정 지방 행정 기관의 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 혹은 시읍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원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2.2.2. 방송법²⁰⁾

2.2.2.1. 방송법 제2조(방송의 정의)

○ 「방송법」 제2조제1항

- 「방송」 이란, 공중(公衆)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의 송신(타인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서 행하는 것도 포함)을 말한다.

○ 「방송법」 제2조제2항(기간방송)

- 기간방송(基幹放送)이란, 「전파법」(1950년 법률 제131호)의 규정에 의해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으로 전적, 또는 먼저 할당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을 말한다.
 - ✓ 무선국은 무선설비 및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사람의 총체를 말한다. 단,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방송법」 제2조제3항

- 「일반방송(一般放送)」 이란, 기간방송 이외의 방송을 말한다.

○ 「방송법」 제2조제13항

- 「기간방송」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 기간방송」

○ 「방송법」 제2조제14항

- 「이동수신용 기간방송」은 자동차나 그 밖에 육상으로 이동하는 것에 설치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수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방송으로 「위성 기간방송」 이 외의 것을 말한다.

○ 「방송법」 제2조제15항

- 「지상 기간방송」은 지상파방송으로 「위성 기간방송」 및 「이동수신용 지상기간방송」 이 외의 것을 말한다.

○ 「방송법」 제2조제20항

- 「방송국」이라 함은 방송을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20) 이연(2022a), <국가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 98p.

2.2.2.2. 방송법 제108조(재해방송)

- 기간방송사업자는 국내 기간방송 등을 실시하면서, 폭풍, 호우, 홍수, 지진, 대규모 화재 그 밖에 「재해대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고, 또는 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 「방송법」 제2조제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의하면, ‘기간방송(基幹放送)’은 「전파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방송을 행하는 모든 무선국, 또는 먼저 할당된 주파수의 주파를 사용하는 방송을 말한다.
- 본 「방송법」 제108조는 기간방송사업자에 대해서 국내 방송 등을 행함에 있어서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경감하는 역할을 하는 방송을 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2.2.3. 방송법 제9조(학교방송의 광고 제한)

- 기간방송사업자는 학교 제공 교육프로그램에서 학교교육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광고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2.2.4. 방송법 제102조(방송프로그램 공급에 관한 협정의 제한)

- 기간방송사업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는 조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2.2.3.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²¹⁾

- 제8조 지진방재응급계획의 특례
 - 경계선언시의 대응 등 지진방재대응대책에 관한 각종 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시를 추진

21) 이연(2022a), <국가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 100p.

- 제9조 경계선언 등
 - 지진재해에 관한 경계선언을 발령 → 각종 계획에 의한 지진방재응급대책조치와 집행 실시
- 제20조 지진예지정보의 전달 등에 관한 재해대책기본법의 준용
 - 국가에서 관측·측량 강화
- 강화계획에 입각해 긴급히 정비해야 할 시설 등의 정비에 보조

2.2.4. 기상업무법²²⁾

2.2.4.1. 기상업무법 제11조(관측성과 등의 발표)

- 기상청은 기상, 지상, 지동, 지구자기, 지구전기 및 수상 관측의 성과 내지 기상, 지상 및 수상에 관한 정보를 즉시 발표하는 것이 공중의 편의를 증진한다고 인정될 때는,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그 외 보도기관의 협력을 요청해서 즉시 그것을 발표하고, 공중에게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2.2.4.2. 기상업무법 제13조(예보 및 경보)

- 기상청은 정부령에 정해져 있는 대로 기상, 지상, 지진동, 쓰나미, 해일, 파랑 및 홍수 등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예보 및 경보를 해야 한다.

2.2.4.3. 기상업무법 제15조

-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기상청이 기상 등을 경보할 때에는 NHK에 통지하고, NHK는 즉시 그 사항을 방송해야 한다.

22) 이연(2022a), <국가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 100p.

2.2.5. 국민보호법(무력공격사태 등 국민보호조치에 관한 법률)²³⁾

2.2.5.1. 국민보호법의 제정 배경

「국민보호법²⁴⁾」은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검토해 오던 법이지만 반대여론이 강한 분야였다. 그러나 2001년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모란봉 호의 불심사건, 그리고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등에 의해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 내에서 유사 법제 제정의 논의가 갑자기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小泉純一郎)로 내각에서 제안한 유사 법제를 기본적 골격으로 무력 공격 사태 관련 3법이 제출되어 법안을 심의하게 되었다. 당시 사회적인 불안과 함께 고이즈미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공동 여당인 공명당의 지지와 제일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유사법에 찬성하게 되어 2003년 다수결로 유사 관련 3법이 성립되었다. 즉,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및 개정, 「자위대법」 및 개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이 그것이다. 이에 힘입어 「국민보호법」은 2004년 6월 18일에 제정, 공포되어 9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2.2.5.2. 국민보호법 제8조(국민에 대한 정보의 제공)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무력공격사태에 있어서 국민보호 조치를 위해 국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동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정공공기관 및 지정지방공공기관은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3) 이연(2022a), <국가위기관리와 긴급재난정보>, 101p.

24) 원래는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서 국민보호조치에 관한 법률(武力攻撃事態等における国民の保護の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이 약해서 「국민보호법(国民保護法)」, 또는 일본 어로는 “유지호(有事法)”이라고도 부른다.

2.2.6. 그 외 관련 법규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도난가이(東南海) · 난가이(南海)지진,
나흔가이코(日本海溝) · 치시마가이코(千島海溝)주변 해구형 지진에 관련된
「지진방재대책법」, 「소방조직법」, 「수해방지법」 등이 있다.

제3장 재난방송의 정의와 의무규정 및 공적 책무

이 장에서는 재난방송의 정의를 비롯하여 재난방송의 이념 및 목적, 그리고 재난방송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재난방송과 관련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제1절 재난방송의 정의 및 목적에서는 ‘재난의 정의’, ‘재난방송의 정의’, ‘재난보도의 정의’에 대해 서술한다. 제2절에서는 ‘재난방송의 이념’, ‘재난방송의 목적’에 대해 서술하고 제3절에서는 ‘재난방송의 기능’, ‘재난방송의 실시 매체 및 역할’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재난방송의 법적 근거’, ‘재난방송 대상’에 대해 서술한다.

제1절 재난방송의 정의

3.1.1. 재난의 정의

재난(Disaster)이란 자연현상이나 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인명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태를 의미한다. 즉, 재난은 인간에게 어떠한 피해를 미치게 되는 사태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태풍이나 홍수가 발생해도 그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미한 피해라면 재난이라고 부르지 않는다.²⁵⁾ 원래, 재난은 자연재난에서 온 말이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사고의 경우도 재난이라고 부른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댐 붕괴 등을 포함한 인재도 사회재난에 포함된다.

재난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재난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현상, 즉 지진이나 태풍, 홍수와 같은 외부의 힘(Hazard: 재난 발생 위험 요소)에 의해 피해를 주는 요인이다. 두번째 요인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²⁶⁾의 취약성, 즉 재난에 대한 방재력의 취약성(Vulnerability)이다. 다시 말해서

25) 이연(2016), <국가위기관리와 재난정보>, 14p.

26) 사회정치학자인 로버트 퍼트남(Robert David Putnam)에 의하면, ‘사회자본(Social

대도시의 인구 밀집현상, 혹은 방재역량 저하, 건물의 내진성이나 대피시설 부족, 재난대책 등 구조 능력의 저하를 말한다. 재난은 외부 힘이 내부의 방재력을 뛰어넘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외부의 힘을 잘 이해함과 동시에 방재력을 강화해 취약성을 저감(방재력 향상)시키는 일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이다²⁷⁾

3.1.2. 재난방송의 정의

방송(Broadcasting)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전파를 통해 공중(公衆)에게 직접, 또는 중계기로 음성정보나 이미지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의미한다.²⁸⁾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제작된 프로그램을 공중(계약자, 또는 이를 수신하는 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²⁹⁾ 하지만 최근 방송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재난방송(Disaster broadcasting)과 재난보도(Disaster reporting)의 개념을 서로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미국은 재난방송을 Disaster broadcasting(system)로 표기하고 있고, 일본은 재난방송을 일반적으로 재해보도(災害報道:Disaster reporting)로 표기하고 있다.

재난방송 이란 재난 발생 시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재난정보를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긴급방송(Emergency broadcasting)을 의미한다. 즉, 재난방송은 현재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을 피해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보도)하는 방송(Radio, TV, DMB, 문자, SNS 등)을 의미한다.³⁰⁾

재난정보를 미리 사전에 전달하는 예보, 경보, 주의보, 특보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이후 재난 상황의 복구·구조·부흥 등의 수습 방송도 여기에 포함된다(광의).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난방송이라고 말한다면 긴급재난경보를 의미한다(협의). 긴급재난경보는

Capital)'은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7) 林春夫(2015), 「災害をうまくのりきるために」 「防災学講座 第4巻 防災計画論」, 京都大学防災研究所編, 134~136p.

28) 이연(2016a), <일본의 방송과 방송문화사>, 23p.

29) 「방송법」 제2조 참조.

30) 이연(2022a), <국가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 215p.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긴급하게 대피나 피난명령을 내려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재난방송 의무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³¹⁾을 부과하고 있다.³²⁾

3.1.3. 재난보도의 정의

재난보도에서 보도(Reporting)라는 의미는 원래 회사에서 내부 서류나 내부 문건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현재 영미권에서는 ‘보고하다’, ‘전하다’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원래 리포터(Reporter)는 기자나 재판기록관 등을 의미한다. 한자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에서는 보도(報道)의 의미가 ‘전하다’, ‘알리다’, ‘보도하다’ 등으로 쓰이며 영어로는 ‘news’의 의미가 강하다. 우리나라로 관행적으로 언론사가 정규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취재·편집해서 제작하거나 뉴스를 취재 편집해서 보도하는 기사를 의미한다. 물론 요즘은 뉴스 개념도 많이 바뀌어서 정규 프로그램이나 오락프로그램 등 방송프로그램 중간에도 긴급 뉴스를 전달해 정규 뉴스의 시간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보도라고 말한다면, 활자뉴스와 문자방송, 재난방송 등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보도나 재난방송은 통상적인 기획이나 취재, 편집 등의 시스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재난경보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넓은 의미의 재난방송으로 재난정보를 사전에 전달하는 예보, 경보, 주의보, 특보뿐만 아니라, 사후 수습인 복구·구조·부흥 등도 포함하고자 한다.³³⁾

31)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기정통부의 재난방송실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32) 이연(2022), <국가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 박영사, 215p.

33) 이연(2022a), <국가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 216p.

제2절 재난방송의 이념 및 목적

3.2.1. 재난방송의 이념

재난방송의 이념, 혹은 추구하는 가치는 재난정보의 공공성, 공익성, 또는 공적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³⁴⁾ 즉, 재난방송의 이념은 재난정보를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자 하는 공공성(Public)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하는 재난정보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구체적인 실천 이념을 논하고자 한다.³⁵⁾

재난방송은 모든 시민이 재난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신속·정확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재난정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나아가서 매체의 특성상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방송을 실시하게 되면 방송의 속성상 신속·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 내용에도 다양성이 확보되어 재난대응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³⁶⁾

재난방송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치와 이념은 재난정보의 공유에 있다. 특히, 재난정보에 취약한 계층에게도 재난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난방송 주요 목적은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취약계층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재난취약계층에게도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취약계층이 제대로 구제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우리 사회는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팬데믹 초기 종식을 위해서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정보 전달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³⁷⁾

34)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및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참조,

35) 이연(2022a), <국가위기관리와 긴급재난정보>, 217p.

3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참조.

37) 이연(2022a), <국가위기관리와 긴급재난정보>, 218p.



[그림 3-1] 재난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자료: 이연(2022a), 217p

3.2.2. 재난방송의 목적

재난방송의 목적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재난 예방과 대비·대응·구조·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방송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재난 피해자나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재난 피해를 받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의 재난보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피해자 중심의 재난보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수습에 지장을 주며, 시청자나 독자, 또는 수습자, 관리자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난피해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의 심정을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것에 방해가 된다.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와 구조자 간에 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재난보도 태도는 신속·정확하게 재난정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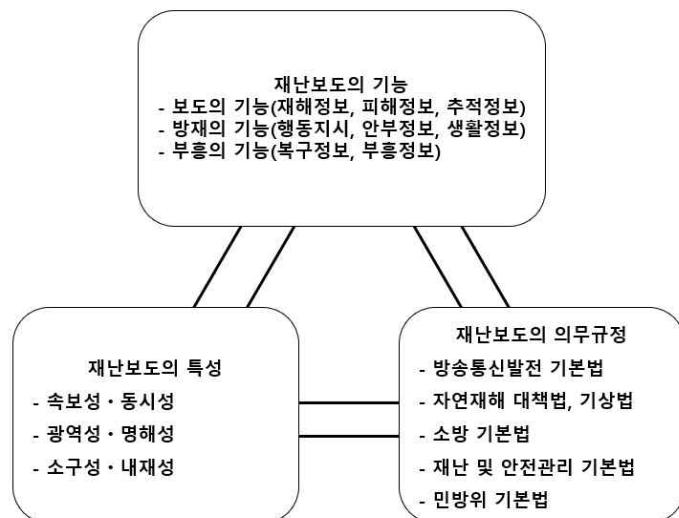
전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방송은 재난정보 전달 매체 중에서 가장 속보성이 뛰어나고 일시에 전파력이 강한 재난 매체이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에는 그 역할이 중요시된다. 특히, 재난 발생 전후를 통해서 긴급대피명령이나 긴급경보방송을 통해 그 피해를 훨씬 더 경감시킬 수 있다. 긴급경보방송의 경우는 평소 뉴스 보도나 다큐멘터리 등 일반적인 프로그램제작 시 적용되는 기준의 저널리즘 제작기준과는 달리, 신속성, 정확성, 전문성 등 고도의 재난대응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재난방송은 재난 발생 직후 긴급대응 뿐만 아니라, 구명·구조·방재·감재 정보 전달에도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³⁸⁾

38) 이연(2022b), 국가위기관리와 재난방송, 16p.

제3절 재난방송의 기능 및 역할

3.3.1. 재난방송의 기능

재난방송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보도의 기능, 방재의 기능, 부흥의 기능이 있다. 이를 단계적으로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2] 재난방송의 기능

재난방송은 재난의 규모나 크기, 피해 상황 등을 전달하는 단순한 보도의 기능 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혼란 속에 빠진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안심시키는 안부 정보, 생활 정보 등도 전달하는 방재 기능도 필요하다. 나아가 재난 발생의 문제점 등을 추적 보도하는 한편, 신속한 복구나 새로운 도시 건설 등 부흥을 꾀하는 부흥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³⁹⁾

39) 이연(2022b), <국가위기관리와 재난방송>, 16p.

특히, 재난방송은 이러한 3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때 3가지 영역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보도하지 않으면 수습이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재난방송의 초점을 시청자나 독자 중심이 아닌 재난 피해 지역, 재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도해야 그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질 수 있다.

또한, 재난방송에서 가장 뛰어난 기능이 속보성과 광역성이다. 재난방송은 속보성과 광역성을 이용해 피해자나 피해 지역에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는 물론, 민영 방송사나 종편, 보도 채널 등의 경우도 주파수 이용의 공적 책무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⁴⁰⁾ 물론, 신문사의 경우도 방송사와 같이 사회의 공기(公器)로 당연히 재난보도를 실시해야 한다. 요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신문과 방송의 경계선도 점점 무너지고 있다. 특히, 일본과 같이 우리도 신문사와 종편이 경쟁하면서 시청률을 위한 재난보도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앞으로 재난보도에서 매체의 특성을 어떻게 잘 살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시청률 경쟁도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코로나19 보도에서 절대 강자인 NHK를 제치고, 민영방송인 TBS NEWS 23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¹⁾

40) 방송통신위원회(2020.01.), <2020년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2~4P.

41) 水島宏明(上智大学教授)(2020.02.25.), TBS NEWS 23

3.3.2. 재난방송의 실시 매체 및 역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의해서 공영방송인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재난 발생 시는 반드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방송의 공익성·공공성 등) 제4항, 제5항에 의해서는 사회적 소수자나 재난취약계층의 소외방지 및 미디어 이용자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첨단 뉴미디어 시대에는 기존의 지상파인 TV, Radio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종합편성채널, DMB, 보도채널 등의 다양한 매체에도 재난방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NHK나 니혼TV, 후지TV, TBS, TV아사히, TV도쿄 등 지상파TV뿐만 아니라, 위성이나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IPTV, 스카이퍼펙트(SKY Perfect), 모바일방송, CATV, 문자방송(One seg.포함),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다양한 SNS매체 등을 이용해서도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있다.⁴²⁾ 우리나라도 일본과 거의 비슷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방송도 이제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을 주된 기축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하더라도, 각종 첨단 매체나 SNS 등 새로운 뉴미디어도 정보공유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함께 재난정보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더 전달 매체를 다양화해야 한다.⁴³⁾

재난방송은 일반 방송과는 달리, 특수한 긴급 상황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방송의 3원칙인 신속·정확(quickness and accuracy)의 원칙, 피해자 중심(victim-centered)의 보도원칙, 인권보호(human rights protection)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⁴⁴⁾ 재난방송의 기본적인 철학은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서, 재난방송은 새로운 2차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여야 하며, 또한 취재의 경우도 구조작업이나 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2) 이연(2022a), <국가위기관리와 긴급재난정보>, 221p.

4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참조.

44) 이연(2016b), <국가위기관리와 재난정보>, 230p.

제4절 재난방송의 법적 근거 및 대상

3.4.1. 재난방송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 재난방송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전시나 준전시에 있어서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총리 및 장관령 등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 기본법」 등에서 정부기관의 요청이 오면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4.1.1.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내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제1항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민방위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비·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 시 제외)’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제4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방송 실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 3자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감시·감독하고 있다.⁴⁵⁾

45) 이연(2022a), <국가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 222~223p.

3.4.1.2.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시 준수해야 할 사항(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인터뷰)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재난방송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3.4.1.3. 재난방송과 법적 책임⁴⁶⁾

재난방송의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난방송 미 실시에 따른 행정규제와 과징금 부여
- 재난방송 준수사항 및 매뉴얼 작성 비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5항에는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 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을 명시
- 재난방송 관련 연수와 교육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6항에는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46) 이연(2022a), <국가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 223p.

재난방송 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을 명시

3.4.2. 재난방송 대상⁴⁷⁾

3.4.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에서는 재난의 정의와 재난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 재난의 정의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재난의 유형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 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와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3.4.2.2. 재난보도준칙 제정과 재난방송

2014년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여 합동으로 <재난보도준칙⁴⁸⁾>을 제정하였다.

47) 이연(2022a), <국가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 224p.

48) 언론단체 제정 재난보도준칙 선포식(2014.09.16.) 자료 참조.

<표 3-1> 재난보도준칙 제2장 및 제3장

제2장 취재와 보도 편

일반 준칙

제3조(정확한 보도) 언론은 재난 발생 사실과 피해 및 구조상황 등 재난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

제4조(임명구조와 수습우선) 긴급한 임명구조와 보호 및 피해수습이 우선이다.

제5조(피해의 최소화) 언론의 기능에는 방재와 복구의 기능이 있어서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비윤리적 취재 금지) 신분사칭이나 비밀 촬영 및 녹음 등 비윤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한 취재는 하지 않는다.

제9조(현장 데스크 윤영) 언론사는 충실한 재난보도를 위해 현장 데스크를 두고 본사 데스크는 현장 상황이 왜곡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난보도를 해야 한다.

제10조(무리한 보도 경쟁 자체) 속보 및 과열경쟁의 자체(경마보도식 속보경쟁은 자체한다.)

제11조(공적 정보의 취급)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공적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관리당국이나 관련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제12조(취재원에 대한 검증) 재난과 관련해 인터뷰나 코멘트를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제13조(유언비어 방지)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과도한 감정 표현, 흥미위주의 보도,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보도는 지양한다.

제16조(감정적 표현 자체)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로 감정적인보도는 자체한다.

제17조(정정과 반론 보도) 사실과 다를 때는 납득할 수 있게 바로잡아야 하고, 반론보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2. 피해자 인권 보호

제18조(피해자 보호) 취재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 등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인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신상공개 주의)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3. 취재진의 안전 확보

제24조(안전 조치 강구) 언론사와 취재진은 취재 현장이 취재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5조(안전 장비 준비) 언론사는 재난 취재에 대비해 언제든지 취재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보호 장비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취재진은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

제26조(재난 법규의 숙지)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내외에서 사전 교육을 받거나 회사가 제정한 준칙 등을 통해 재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충분한 취재지원) 언론사는 재난 현장 취재진의 안전 교통 숙박 식사 휴식 교대 보상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사후 심리치료나 건강검진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언론사의 의무

제34조(지원 준비와 교육) 언론사는 재난보도에 관한 교재를 만들어 비치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재진의 빠른 현장 적응을 돋는다.

제3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언론사는 노약자, 지체부자유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게도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쓴다.

자료: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⁴⁹⁾

49)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접속일:

2022.11.30.),

URL:

https://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0

제4장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한 법·제도적 재정비

이 장에서는 국내 재난방송과 관련된 법률 및 표준매뉴얼을 분석한다. 제1절 재난방송과 관련된 법률 분석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헌법」, 「방송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상법」, 「자연재해 대책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소방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림보호법」, 「민방위 기본법」 등에 대해 서술한다. 제2절에서는 재난방송 등 표준 매뉴얼의 「성격」 및 「구성」에 대해 서술한다. 제3절에서는 법·제도적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한다.

제1절 재난방송과 관련된 법률 분석

4.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해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동법 제40조(재난방송 등)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또는 「민방위 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라 재난이나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 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에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 관한 규정도 있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4.1.2. 헌법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1.3. 방송법

「방송법」 제1조(목적)에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⁵⁰⁾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리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4.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에는 재난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동법 제4조에는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에는 재난방송협의회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지역재난방송협의회 등에 관한 역할이나 조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지역재난방송협의회가 구성된 자자체는 3곳 정도에 불과하다. 동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 관리 및 훈련)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월 27일 발효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발효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그리고 제38조의2(재난 예보 · 경보체계 구축 · 운영 등) 제1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또한 강력한 의무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

4.1.5. 기상법

50) 3.2.1 재난방송의 이념에서 재난방송의 이념, 혹은 추구하는 가치는 재난정보의 공공성, 공익성, 또는 공적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상법」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는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신문사·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제1항에는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난방송 주관기관에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은 없다.

4.1.6. 자연재해 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목적)에는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재난방송에 관한 직접적인 특별 규정은 없는 상태다.

4.1.7.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닌다. 제3항에는 지진 관측·분석·통보·경보전파 및 대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보의 전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는 상태다.

4.1.8. 소방 기본법

「소방 기본법」 제1조(목적)에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 금강송 단지 및 경북 울진 산불과 같은 경우에 인터넷 두절 등으로 산불경보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4.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속한 입법 등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보 전달에는 많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4.1.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에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이고 실질적인 저감 대책도 너무 느슨해 보인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간적인 경보메시지도 없는 상태다.

4.1.11.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제1조(목적)에는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 · 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 · 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 · 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1항에는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시 · 도지사)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구역 규정은 있다. 다만, 화재로 인한 국보급 금강송이나 중요 수목의 보호규정에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다.

4.1.12. 민방위 기본법

「민방위 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민방위” (이하 “민방위사태” 라 한다)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 · 구조 ·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제2절 재난방송 등 표준 매뉴얼

제1절에서는 재난방송과 관련된 국내 법률을 분석하였는데, 이 절에서 언급한 법률 외에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재난방송 등 표준 매뉴얼이다. 이 표준 매뉴얼은 재난방송 운영 및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4.2.1. 성격⁵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기상법」 제16조,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 제1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기상청, 행정안전부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요청 직무수행의 기준이다. 그리고 재난상황 종료 후 재난방송 실시 성과를 점검, 평가하기 위한 분석 기준이기도 하다.

4.2.2. 구성

재난방송 등 표준 매뉴얼은 재난방송 등 개요, 재난방송 운용체계, 재난유형 및 단계별 재난방송 실시 기준 등 세 가지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방송 등 개요는 5개 소분류로, 재난방송 운용체계는 9개 소분류로, 재난유형 및 단계별 재난방송 실시 기준은 6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 매뉴얼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52).}

51) 방송통신위원회(2019.12.27.), <재난방송 등 표준 매뉴얼>

52) <재난방송 등 표준 매뉴얼>의 내용을 기본으로 표로 정리하였다.

<표 4-1> 재난방송 등 표준 매뉴얼의 구성

분류	주요 내용
재난방송 등 개요	재난방송 등의 정의
	재난방송 등의 목적
	재난방송 등 관련 법규정
	재난방송 등 실시에 관한 기준
	표준 매뉴얼의 성격
재난방송 운영체계	재난방송 등의 실시 체계
	재난방송 등의 실시 주체
	재난방송 등의 실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편성 및 방송시간 연장
	재난방송시 준수사항
	재난방송 실시 결과 보고기준 및 평가
	재난현장 취재시 유의사항
재난유형 및 단계별 재난방송 실시 기준	재난방송 관련 각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재난 취재 안전수칙
	재난방송 등의 단계
	기상특보 및 지진정보 기준
	민방위 경보방송의 기준
	사회재난 재난방송의 기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 기준
	단계별 재난방송 구성형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는 법률은 있다. 여기서는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작한 표준 매뉴얼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제3절 법 · 제도적 재정비의 필요성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법제도적 근거에 기반하여 재난방송 등을 포함하는 예·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재난방송도 다양한 법률 및 관련 고시, 재난방송 등 표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각 법률에서 명시하는 재난방송 용어, 요청 대상, 주관방송사 호칭 등이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다. 또한, 재난방송 등 표준 매뉴얼에서는 재난방송 실시·운영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작한 표준 매뉴얼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실시·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재정비가 필요하다.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난방송의 실시·운영에 대한 부분을 취합하고 보완하여 재난방송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특별법은 일반법에서 적용하는 범위를 한정하거나 내용을 특별히 정해 놓은 법을 말한다.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나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법과 영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별법을 우선시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재난방송협의회 및 재난방송 평가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재난방송협의회와 재난방송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재난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1절 효율적인 재난방송과 재난방송협의회 구축에서는 ‘재난방송협의회 구축과 효율성’,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체제 구축’에 대해 서술한다. 제2절 재난방송 평가방법과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 제고에서는 ‘재난방송 평가방법의 개선’, ‘재난방송 평가에서 정성평가의 도입 방안’, ‘재난방송 평가기준의 개선점’, ‘재난방송 과태료 부과 방법의 합리성과 형평성 제고’에 대해 서술한다.

제1절 효율적인 재난방송과 재난방송협의회 구축

5.1.1. 재난방송협의회 구축과 효율성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을 신속하게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호우나 태풍, 대형사건·사고 등은 국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연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재난방송중앙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재난방송협의회는 대구 경북이나 제주도 등 몇 곳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다.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재난현장의 관할 구역인 시·군·구의 지역재난방송협의회 구성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의 방송사나 신문사, 인터넷신문, 케이블TV 등 지역미디어로 구성된 재난방송협의회의 역할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속한 대응도 문제이지만, 전파낭비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제1항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신속한 재난방송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둔다는

규정이 있다. 동법 제12조 제2항에도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광역시에도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 제3항에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5.1.2.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체제 구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6조(지역재난방송 대책본부 등)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에 관한 재난 방송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지역재난방송 대책본부를 둔다.
- 지역재난방송 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 지역재난방송 본부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며, 지역재난방송 대책본부장은 지역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재난방송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차장의 경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부 단체장이 된다. 실무진의 경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재난담당 책임자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소 책임자로 구성한다.
-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구성은 각 지역마다 소재한 지상파방송지사나 지역민방, PP, SO, 신문사, 인터넷신문 등의 언론사들로 구성한다.
- 권역별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한다.

5.1.2.1. 권역별 지역방송협의회 구성⁵³⁾

권역별 지역재난방송협의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축해 볼 수 있다. 우선,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 방송통신 사무소를 활용해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사무를 관리하게 한다. 관할 구역은 아래 도표와 같이 지역을 구분해서 사무 분장을 담당한다.

<표 5-1> 지역재난방송협의회 관할구역 업무 분장

방송통신사무소명	관할 지역	지역재난방송담당	지역방송협의회명
서울사무소(24명)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인권, 강원권협의회
대전분소(7명)	대전, 세종, 충청	대전, 세종, 충청	충청권협의회
광주분소(명)	광주, 전라, 제주	광주, 전라, 제주	전라권, 제주권협의회
부산분소(명)	부산, 대구, 울산, 경상	부산, 대구, 울산, 경상	부울마권, 대경권협의회

자료: 최성종 외(2020)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의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단,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은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언론사 사장단으로 구성 한다. 단, 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방송통신 및 언론관련 필요 분야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지역재난방송협의회는 재난방송관리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중의 하나다. 특히, 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설립해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53) 방송통신위원회(2020), <국민 맞춤형 재난방송 실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권역별 지역방송협의회 구성안을 제안하였다.

여건상 점차적 확대가 바람직해 보인다.

5.1.2.2. 권역별 지역재난방송협의회 구성(예)

- 경인권 지역재난방송협의회
- 강원권 지역재난방송협의회
- 대전충청권 지역재난방송협의회
- 광주전라권 지역재난방송협의회
- 대구경북권 지역재난방송협의회
- 부울경남권 지역재난방송협의회
- 제주권 지역재난방송협의회

5.1.2.3. 권역별 재난방송시스템의 강화 방안

첫째, 서울과 수도권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언론사의 전문 인력이나 장비의 태부족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둘째, 권역별 지역방송사들의 인력 부족이나 열악한 장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방송 장비의 보강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열악한 지역에는 정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 등으로도 공동취재나 권역별 합동 재난방송 등으로 지역의 재난안전을 위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넷째, 지역방송 지사나 지역 민영방송사의 경우는 광고도 못하는 상황에서 인력과 장비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개별 방송사의 운영에 관한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제2절 재난방송 평가방법과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 제고

5.2.1. 재난방송 평가방법의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 세부기준에서 재난방송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 방송평가 세부기준이 개정되었다. 2021년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세부기준과 배점 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5-2> 2021년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배점 방식

평가척도	세부기준	지상파				SO/ 위성 (30)	종편 PP (45)	보도 PP (60)	홈쇼 핑 PP (20)
		TV(5 5)	TV 지역 (60)	R (60)	DMB (25)				
재난방송 편성 의 적절성	재난방송의 편성 실적에 대한 9등급 평가	-	-	20	15	6	-	15	10
	재난피해 사전 예방 등 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에 대한 9등급 평가	-	-	15	5	4	-	15	5
	재난방송 실시율 5등급 평가	-	-	10	-	6	-	10	-
재난방송 매뉴 얼의 적정성	자체 제작된 재난방송 매뉴얼 보유 여부 (보유 5점, 미보유 0점)	-	-	5	5	4	-	5	5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 영 여부 (인력 운영 5점, 미운영 0점)	-	-	5	-	6	-	5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 적에 대한 9등급 평가	-	-	5	-	4	-	5	-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 시정 조치 비율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 시정 조치한 비율을 5등 급 평가	-	-	-	-	-	-	5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21.12.28.)

5.2.2. 재난방송 평가에서 정성평가의 도입 방안

지금까지 재난방송 평가방법은 대체로 정량적인 부분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정량적인 평가방법과 정성적인 평가방법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재난방송 평가에서 질적 평가방법은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개선해 보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재난방송 평가 매체 중에는 다양한 매체를 일률적으로 질적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방송사의 규모나 유형 및 업종, 방송형태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분류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예를 들면, 방송사의 인력 구조나 프로그램 제작형태, 송출방식 및 수입이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 즉, 지상파TV와 라디오가 다르고, 위성이나 종편, PP, SO 등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2020)는 재난방송 의무대상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상파TV, DMB,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SO, 위성, IPTV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5.2.2.1. 재난방송 의무대상사업자

방송사업자 구분별로 재난방송 의무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주요 방송사는 다음과 같다.

<표 5-3> 재난방송 의무대상사업자 일람표 (2020년 9월 기준)

사업자 구분	주요 방송사업자	소계
지상파	KBS, MBC, SBS, EBS, 16개 지역 MBC, 9개 민방(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울산, 강원, 제주)	29개 (TV, 라디오)
	OBS(경인TV)	1개 (TV 단독)
	경기방송, 경인방송(Sunny FM)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카톨릭평화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도로교통공단, 서울시(tbs, tbs-eFM), 국제방송교류재단(제주 영어 FM), 부산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국악방송,	14개 (라디오 단독)

	와이티엔 라디오	
DMB	KBS(단일), MBC, SBS, YTNDMB, 한국DMB, UI미디어 춘천MBC, GI, 대전MBC, 대전방송, 안동MBC 대구방송, 부산MBC, KNN, 광주MBC, 광주방송, 제주MBC, 제주방송	18개
종합편성 PP	MBN, JTBC, TV조선, 채널A	4개
보도 PP	연합뉴스TV, YTN	2개
SO	인천방송, 은평방송, 금정방송, 중앙방송, 중부산방송, 해운대기장 방송, 대구동구방송, 대구수성방송, 북인천방송, 부천/김포방송, 경 기북부방송, 영동방송, 영서방송, 강원방송, 충남방송, 신라방송, 영남방송, 가야방송, 마산방송, 경남방송, 전북방송, 호남방송, 전 남동부방송, 하나방송, CJ헬로비전(24개) 강서방송, 노원방송, 도봉강북방송, 동대문방송, 서대문방송, 광진 성동방송, 종로중구방송, 낙동방송, 동남방송, 서부산방송, 티씨엔 방송, 대경방송, 대구방송, 남동방송, 새롬방송, 서해방송, 에이비 씨방송, 한빛방송, 수원방송, 기남방송, 중부방송, 전주방송, 세종 방송, 티브로드(23개) 강남케이블방송, 강동케이블방송, 중앙케이블방송, 중랑케이블방 송, 구로금천케이블방송, 노원케이블방송, 마포케이블방송, 서서울 케이블방송, 서초케이블방송, 동서울케이블방송, 북부케이블방송, 송파케이블방송, 용산케이블방송, 경기케이블방송, 경동케이블방 송, 우리케이블방송, 경기동부방송, 딜라이브(17개) 현대HCN, 동작방송, 서초방송, 부산방송, 금호방송, 충북방송, 새 로넷방송, 경북방송, 현대HCN(8개) 동서방송, 한간케이블TV, 대구방송, 수성지점, 동대전지점, 대전방 송, 광주방송, 동부지점, 충청방송, 세종지점, 전남지점, 씨엠비(11개)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남인천방송, 한국 케이블TV, 광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씨씨에스 충북방송, 서경 방송, 금강방송, KCTV제주방송, 개별 SO(9개)	92개
위성	KT 스카이라이프	1개
IPTV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3개
	합계	164개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20.01.)⁵⁴⁾

54) 방송통신위원회(2020.01.), 2020년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5.2.2.2. 업종별 재난방송 의무대상사업자 분류

방송통신위원회는 업종별로 재난방송 의무대상사업자를 위의 도표와 같이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는 대체로 방송사들의 규모나 프로그램제작 및 송출방식 등에 따라 비슷한 업종끼리 분류한 것이다. 이 분류표에서 재난방송을 방송사 스스로 자체 제작해서 실시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 파급효과 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난방송 의무대상사업자를 다시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5-4> 재난방송 의무대상 사업자 분류표

구간별 그룹	의무대상 사업자	소계
A그룹	지상파방송(30개), DMB(18개), (라디오 단독은 제외)	48개
B그룹	종편PP(4개), 보도PP(2개), R 단독(지상파 14개), 위성(1개)	21개
C그룹	SO(92개), IPTV(3개)	95개
합계		164개

자료: 최성종 외(2020)

5.2.3. 재난방송 평가기준의 개선점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기준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난방송 평가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 제작 여부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재난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는 영상과 스크롤을 방송해야 만점이 되고, 자체 제작이 불가능한 방송사업자(SO)는 KBS 공영방송이나 타사의 재난 채널 정보를 중계만 해도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향후는 위의 그룹별로 능력에 맞게 재난방송 평가 기준 점수를 설정해서 제시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라디오방송은 24시간 재난방송에 대응 가능한 매우 유용한 재난방송채널이다. 하지만 TV채널과 겹업이 아닌, 라디오 단독 채널사업자의 경우는 프로그램 제작형태나 인력 및 운영 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단독

채널사업자, 원음방송 같은 특수형태의 방송사업자에게는 평가 기준을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재난방송 실시 중에서 지역명을 모두 거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외 규정을 두어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한 기계적인 재난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위에서 분류한 그룹에 따라 재난평가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대형 재난 발생 시는 정성평가 도입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A, B그룹의 경우는 재난 발생 시 보도본부 및 사고현장 데스크 설치 여부 등도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부 데스크의 경우도 사내 전문가 출동 및 본부 데스크의 전문가 인터뷰 여부, 또는 현장 리포터의 취재 여부 등도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재난 예보, 주의보, 특보 등에 대해서도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난방송 평가방송 기준을 보면, 지금까지는 재난방송의 특성이나 유형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긴급재난경보나 주의보를 우선시 하다보니 재난방송의 기준이 혼돈스러울 정도로 복잡해졌다. 앞으로는 지진의 경우 진도의 규모에 따라 재난 영상은 어떻게 방송하고 자막과 스크롤은 어떻게 방송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재난방송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재난 종류별, 매체별로 보다 구체적인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해야 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다.

5.2.4. 재난방송 과태료 부과 방법의 합리성과 형평성 제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8조(과태료)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호의 내용에는 제36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동법 제4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되어 있다. 기준에는 방송사업의 형태나 매출 규모, 종업원 수, 재난방송 제작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방송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방송사업자 역량 등의 특성을 구분하여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태료 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업종별 재난방송 의무대상 사업자 분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에 따른다. 이 조항에서 재난방송 의무대상 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의 분류표는 재난방송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서 방송할 수 있는 제작 여건과 인력, 방송망, 재난방송 수신지역, 송출 방식 등에 따라서 재분류한 것이다.

<표 5-5> 재난방송 의무대상 사업자 분류표

구간 그룹	의무대상 사업자	소계
A그룹	지상파방송(29개), OBS(경인TV: 1개), DMB(18개)	48개
B그룹	종편PP(4개), 보도PP(2개), R 단독(지상파 14개), 위성(1개)	21개
C그룹	SO(92개), IPTV(3개)	95개
합계		164개

자료: 최성종 외(2020)

과태료 부과는 위의 분류표와 같이 그룹별로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A그룹의 상한선은 1,000만 원, B그룹의 상한선은 600만 원, C그룹 상한선은 300만 원으로 정할 수 있다.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재난방송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재난방송 선진화에 필요한 기술적, 인적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재난방송과 기술 표준에서는 ‘표준의 정의’, ‘표준의 종류’, ‘표준의 절차’, ‘재난방송 기술 표준 현황’, ‘재난방송 기술과 표준’에 대해 서술한다. 제2절 전문인 양성과 국제교류에서는 ‘재난방송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인 양성’, ‘재난방송 전문인 양성을 위한 연수제도 시행’, ‘재난방송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의 노력’, ‘남북 간 재난방송통신 정보의 교류와 협력 필요’에 대해 서술한다.

제1절 재난방송과 기술 표준

6.1.1. 표준의 정의⁵⁵⁾

표준(Standard)이란 측정이나 참조 혹은 판단을 위한 근거, 기준, 목표 등을 의미한다. 국제표준기관인 ISO/IEC에서는 표준을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성취를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라고 정의한다. 표준은 과학, 기술 및 경험에 대한 총괄적인 발견사항들에 근거하여야 하며, 공동체 이익의 최적화 촉진을 목표로 제정해야 한다.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사물, 개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따르고 활용하기 위한 규칙, 지침, 가이드 등을 만드는 조직적 행위를 의미한다. ISO/IEC에서는 표준화를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을 성취할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표준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에서부터 자동차, 비행기 등 모든 제품 및 부품의 치수, 성능, 재질, 시험방법 등을 통일화 및 단순화 시켜 기준에 따르도록

55)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의 내용을 기본으로 정리하였다.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합의, 공개원칙, 자발성존중,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 시장적합성, 경제성, 공공이익 추구 등 여러 원리를 기초로 만들어지고 있다.

표준화의 목적은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등 표준화의 대상이 본래의 의도된 목적으로 작용하도록 개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공공이익 및 무역장벽의 제거 등을 추구하는데 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각종 부품이 통일화 및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각 회사마다 독자적인 표준으로 부품을 생산한다면,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쉽게 부품을 교체할 수 없게 되어 대단히 불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조립할 때에도 불편할 것이다. 이렇듯 대량생산과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표준화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화의 목적과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준화의 목적

- 제품 및 업무 행위의 단순화와 호환성 향상
- 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의 원활(상호이해)
- 전체적인 경제성 추구
- 안전/건강/환경 및 생명 보호
- 소비자 및 작업자의 이익 보호
- 현장 및 사무실 자동화에 기여

○ 표준화의 효과

- 품질의 향상과 균일성의 유지
- 생산 능률의 증진과 생산 원가 절감
- 부품의 호환성 증가
- 인력과 자재의 절약
- 종업원의 교육, 훈련 용이
- 작업 능률의 향상

6.1.2. 표준의 종류⁵⁶⁾

표준은 크게 3가지로 국가표준, 국제표준, 단체표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⁵⁷⁾.

국가표준 이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산업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등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산업표준이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을 운영하며, 이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이라 한다. 또한, KS표시인증제도를 통해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하고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 확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

국제표준이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있다. ISO는 1947년도에 설립된 비정부조직(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으로 전 세계 160여 개국의 국가표준기관의 연합체이다.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지식, 과학, 기술 및 경제활동분야의 협력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표준화 및 관련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제표준기관들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산업 전반과 서비스에 관한 국제 표준 제정을 담당한다.

단체표준이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이다. 국내의 경우, ICT 관련 기술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56) e나라표준인증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의 내용을 기본으로 정리하였다.

57) 3가지 분류 외에 사내표준이 있다. 사내표준은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기술 표준이다.

Association: TTA)에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단체표준의 목적 등 주요 속성은 다음과 같다.

○ 단체표준의 목적

-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공동이익 추구
- 제품 품질향상,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 한국산업표준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보완
- 한국산업표준과 사내 기술의 교량 역할
-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 대응

○ 단체표준 제정 단체의 요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함)
-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단체표준의 요건

-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6.1.3. 표준화 절차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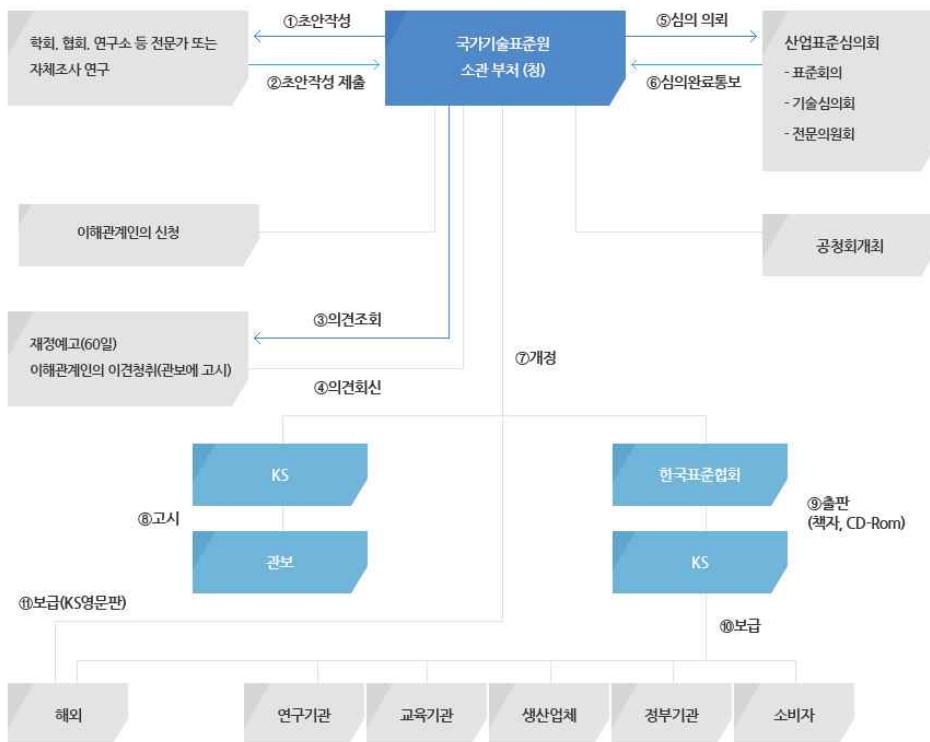
6.1.3.1. 한국산업표준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소관부처의 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된다. 1961년 「공업표준화법」 제정에 따라 1962년 3,000종의 국가표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으며, 국제표준과 대응되는 표준의 경우 부합화 하여 운영한다.

한국산업표준의 제·개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국가기술표준원장

58) e나라표준인증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의 내용을 기본으로 정리하였다.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안하여 학회·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국제표준의 제정 및 신제품 개발 등으로 광공업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호환성 확보 등 의 필요에 의해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안하는 경우로서,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거나 학회·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게 된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산업체 등 이해 관계자는 언제든지 국가에 한국산업표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신청서에 표준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표준화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표준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으로 확정된다.



[그림 6-1] 한국산업표준 표준화 절차

자료: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⁵⁹⁾

6.1.3.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정보통신 산업과 기술진흥, 국민경제 발전을 목표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1988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준화를 담당하는 주 분야는 통신망, 이동통신, 방송,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등이 있다. TTA의 표준화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TTA의 표준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표준 제정/개정/폐지 과정을 제안한다.

59)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접속일: 2022.11.30.), URL: <https://www.standard.go.kr/KSCI/standardIntro/ksForApplying.do?menuId=517&topMenuId=502&upperMenuId=504>

접수된 제안 과제는 IPR인지·처리 과정을 거친 후 표준화 과제 선정 타당성 검토를 통해 표준화 과제로 채택이 이루어진다. 이후 표준의 지식재산권을 확인하고, 작성된 표준 초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의견 검토를 통해서 최종 표준안으로 채택한다. 채택된 표준안에 대한 표준 심의 및 제정/개정/폐지를 결정하여 TTA 표준으로 공고하거나 국가표준으로 제안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림 6-2] TTA 표준화 절차

자료: TTA 홈페이지[60])

60) TTA 홈페이지(접속일: 2022.11.30.), URL: <http://committee.tta.or.kr/join/process.jsp>

6.1.4. 재난방송 기술 표준 현황⁶¹⁾

국내 재난방송 기술에 대한 표준은 주로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다. 재난방송 기술에 대한 표준 외에도 재난방송 서비스에 필요한 수신기의 표출 문구나 이미지 등에 대해 기술한 표준도 존재한다.

6.1.4.1.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 Part 3: 시스템즈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 Part 3: 시스템즈는 TTA에서 제정된 표준으로 지상파 UHDTV 방송 서비스 중 재난방송 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표준의 목적은 지상파 UHDTV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즈 규격을 정의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프로그램 및 채널 레벨의 방송 신호 다중화 방식, 링크 계층의 시스템 구조 및 패킷 포맷에 대한 것이 있다.

표준종류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표준번호	TTAK.KO-07.0150/R1			구 표준번호				
제개정일	2021-12-08			총페이지	208			
한글 표준명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 Part 3: 시스템즈							
영문 표준명	Transmission and Reception for Terrestrial UHDTV Broadcasting Service – Part 3: Systems							
한글 내용요약	본 표준은 지상파 UHDTV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즈 규격에 대해 정의한다. 본 표준은 크게 2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다. ‘5절. 프로그램 다중화 및 채널 다중화’에서는 프로그램 및 채널 레벨의 방송 신호 다중화 방식에 대하여 다룬다. 이어서 ‘6절. 링크 계층 프로토콜’에서는 링크 계층의 시스템 구조 및 패킷 포맷에 대해 다룬다.							
영문 내용요약	This standard contains specifications of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ultra-high definition television service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This standard consists of two parts which are as follows: Chapter 5 Program multiplexing & Channel multiplexing and Chapter 6 Link layer Protocol.							
관련 IPR 확인서	접수된 IPR 확인서 없음							
관련파일	[TTAK.KO-07.0150_R1.pdf]							
표준이력	표준명	표준번호	제개정일	구분	유효여부	IPR 확인서	파일	
표준이력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 Part 3: 시스템즈	TTAK.KO-07.0150/R1	2021-12-08	개정	유효	없음	[]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 Part 3: 시스템즈	TTAK.KO-07.0150	2021-06-30	개정	유효	없음	[]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 Part 3: 시스템즈	TTAK.KO-07.0127/R5-Part3	2020-12-10	개정	유효	[보기]	[]	

[그림 6-3]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 Part 3: 시스템즈’ 표준 정보
자료: TTA 홈페이지⁶²⁾

61) TTA 홈페이지의 내용을 기본으로 정리하였다.

62) TTA 홈페이지(접속일: 2022.11.30.), URL:

6.1.4.2.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 재난경보 서비스 요구사항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 재난경보 서비스 요구사항은 TTA에서 제정된 표준으로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을 이용한 긴급 재난경보 서비스 송수신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이 표준의 목적은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으로 긴급 재난경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 재난경보 서비스 개요, 서비스 요구사항, 수신기 요구사항이 있다.

표준종류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표준번호	TTAK.KO-07.0140				구 표준번호				
제개정일	2019-12-11		총페이지	20					
한글 표준명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 재난경보 서비스 요구사항								
영문 표준명	Requirements for Emergency Alert Service of Terrestrial UHD Mobile Broadcasting								
한글 내용요약	이 표준은 주요 내용으로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을 이용한 긴급 재난경보 서비스 송수신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정의한다.								
영문 내용요약	The main contents of the standard defines the requirements for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emergency alert service using terrestrial mobile UHD broadcasting, and describes the items to be considered such as the type of disaster to be alerted, the target terminal, and so on.								
관련 IPR 학역서	접수된 IPR 학역서 없음								
관련파일	TTAK.KO-07.0140.pdf								
표준이력	표준명	표준번호	제개정일	구분	유효여부	IPR 학역서	파일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 재난경보 서비스 요구사항	TTAK.KO-07.01 40	2019-12-11	제정	유효	없음	파일		

[그림 6-4] ‘지상파 UHD 모바일방송 재난경보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정보

자료: TTA 홈페이지⁶³⁾

<https://tta.or.kr/tta/ttaSearchView.do?key=77&searchStandardNo=TTAK.KO-07.0150/R1&searchCate=TTAS>

63) TTA 홈페이지(접속일: 2022.11.30.), URL: <https://tta.or.kr/tta/ttaSearchView.do?key=77&searchStandardNo=TTAK.KO-07.0140&searchCate=TTAS>

6.1.4.3. 지상파 UHD 기반 자주방송용 재난정보서비스 구현 가이드

지상파 UHD 기반 자주방송용 재난정보서비스 구현 가이드는 TTA에서 제정된 표준으로 지상파 UHD 방송 신호에 포함된 재난정보를 수신하여 직접 수신이 불가능한 망과 연동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이 표준의 목적은 지상파 UHD를 직접 수신할 수 없는 사용자에게도 재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주방송과 연동하여 제공하는 것에 있다.

표준종류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표준번호	TTAK.KO-07.0156				구 표준번호	
제개정일	2022-12-07				총페이지	20
한글 표준명	지상파 UHD 기반 자주방송용 재난정보서비스 구현 가이드					
영문 표준명	Implementation Guide to Emergency Information Service based Terrestrial UHD for Self-Broadcasting System					
한글 내용요약	이 표준은 지상파 UHD 방송 신호에 포함된 재난정보를 수신하여, 재난정보 서비스 수신이 불가능한 CCTV 방송, 사내방송, 해외 위성방송 등 자주방송 시청자들도 재난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상파 UHD 기반 자주방송용 재난정보 서비스 구현 가이드를 기술한다.					
영문 내용요약	This is a guide on how to implement an emergency information service based on terrestrial UHD for self-broadcasting viewers who cannot watch the emergency information provided by broadcasters through the broadcasting network.					
관련 IPR 학약서	[학약서 보기]					
관련파일	[TTAK.KO-07.0156.pdf]					
표준이력	표준명	표준번호	제개정일	구분	유효여부	IPR 학약서
	지상파 UHD 기반 자주방송용 재난정보서비스 구현 가이드	TTAK.KO-07.01 56	2022-12-07	제정	유효	[보기]

[그림 6-5] ‘지상파 UHD 기반 자주방송용 재난정보서비스 구현 가이드’ 표준 정보
자료: TTA 홈페이지⁶⁴⁾

6.1.4.4. 전용수신기를 위한 지상파 UHD 재난경보서비스 구현 가이드

전용수신기를 위한 지상파 UHD 재난경보서비스 구현 가이드는 TTA에서 제정된 표준으로 지상파 UHD 방송망과 전용 수신기에서 재난정보를 수신하여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이 표준의 목적은 지상파 UHD의 재난경보방송 서비스 적용을 위한 방법과 사례 등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 지상파 UHD 재난경보 형식인 AEAT 사용법, 사용사례, 구성사례, 응용 서비스 등이 있다.

64) TTA 홈페이지(접속일: 2022.11.30.), URL: <https://tta.or.kr/tta/ttaSearchView.do?key=77&searchStandardNo=TTAK.KO-07.0156&searchCategory=TTAS>

표준종류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표준번호	TTAK.KO-07.0142/R2	구 표준번호					
제개정일	2021-06-30	총페이지	52				
한글 표준명	전용수신기를 위한 지상파 UHD 재난경보서비스 구현 가이드						
영문 표준명	Implementation Guide to Terrestrial UHD Advanced Emergency Alert Service for Dedicated Receiver on Public Area						
한글 내용요약	T-UHD AEA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실시하는 재난방송을 의미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T-UHD AEA 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송사가 UHD 방송망과 전용 수신기를 통하여 더 많은 재난 관련 정보 또는 재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AEAT의 용법, NRT 이용 사례, PLP 구성 사례 등에 대해 기술하고 향후 체계적 가능한 응용서비스에 대해서 정의한다. 본 표준은 지상파 UHD 방송망을 이용하여 긴급재난정보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는 AEA 시스템의 구현 가이드로 T-UHD 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기준에 맞게 적용한다.						
영문 내용요약	The standard describes the use of AEAT, examples of NRT use, PLP configuration cases, etc. and defines application services that can be provided in the future. Using T-UHD AEA system, broadcasters can provide users with more disaster-related alarms or disaster information quickly and accurately through T-UHD broadcasting network and dedicated receiver. The standard is the implementation guide of AEA system that can transmit and receive emergency disaster information using T-UHD broadcasting network, and it is applied based on T-UHD standard.						
관련 IPR 학약서	접수된 IPR 학약서 없음						
관련파일	[65] TTAK.KO-07.0142_R2.pdf						
표준이력	표준명	표준번호	제개정일	구분	유효여부	IPR 학약서	파일
	전용수신기를 위한 지상파 UHD 재난경보서비스 구현 가이드	TTAK.KO-07.01 42/R2	2021-06-30	개정	유효	없음	[65]
	전용수신기를 위한 지상파 UHD 재난경보서비스 구현 가이드	TTAK.KO-07.01 42/R1	2020-12-10	개정	유효	없음	[65]
	전용수신기를 위한 지상파 UHD 재난경보서비스 구현 가이드	TTAK.KO-07.01 42	2019-12-11	제정	유효	없음	[65]

[그림 6-6] ‘전용수신기를 위한 지상파 UHD 재난경보서비스 구현 가이드’ 표준 정보
자료: TTA 홈페이지⁶⁵⁾

6.1.4.5.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T-DMB): 자동인지 재난방송 서비스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T-DMB): 자동인지 재난방송 서비스는 TTA에서 제정된 표준으로 지상파 DMB의 자동인지 기술을 활용한 재난방송 서비스에 대해 기술한다. 이 표준의 목적은 사용자가 지상파 DMB를 시청 중이지 않더라도 대기 상태의 지상파 DMB 단말기를 자동 활성화시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송수신 정합 규격을 정의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지상파 DMB 자동인지 재난방송 서비스 메시지 생성, 다중화를 위한 메시지 계층 구조, 지상파 DMB 자동인지 재난방송 전송 시스템 규격 정의가 있다.

65) TTA 홈페이지(접속일: 2022.11.30.), URL: <https://tta.or.kr/tta/ttaSearchView.do?key=77&searchStandardNo=TTAK.KO-07.0142/R2&searchCate=TTAS>

표준종류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표준번호	TTAK.KO-07.0116	구 표준번호				
제작정일	2013-12-18	총페이지	39			
한글 표준명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T-DMB): 자동인지 재난방송 서비스					
영문 표준명	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T-DMB): Emergency Wake-up Alert System					
한글 내용요약	T-DMB 자동 인지 재난방송 서비스 메시지 생성 및 다중화를 위한 메시지 계층 구조와 T-DMB 자동 인지 재난방송 전송 시스템 규격을 정의한다. 본 표준에서 정의하는 T-DMB 자동 인지 재난방송 서비스 메시지 계층 구조는 다음의 다섯 개의 계층으로 구성된다. - 재난방송 정보 계층 - 재난방송 정보 서비스 계층 - 분할 계층 - 서비스 페킷 계층 - 전송 프레임 계층 본 표준에서 정의하는 T-DMB 자동 인지 재난방송 전송 시스템은 다음의 네 가지 요소로 나온다. - T-DMB 방송신호 생성부 - 재난 방송 신호 생성부 - 부가 데이터 재날 합성부 - RF 송신부 이 중 재난 방송 신호 생성부는 다시 다음의 여섯 가지 요소로 나온다. - 자동 활성화 신호 생성 및 확산부 - 채널코딩 및 인터리버부 - 신호 확산부 - 송신 프레임 다중화부 - 폴스 설계부					
영문 내용요약	This standard defines the hierarchical message structure of the T-DMB emergency wake-up alert broadcast service and the specification of the T-DMB emergency wake-up alert transmission system. The hierarchical message structure of the T-DMB emergency wake-up alert broadcast service defined in this standard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four layers: ??Emergency alert broadcast information layer ??Emergency alert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layer ??Fragmentation layer and service packet layer ??Transmission frame layer The T-DMB emergency wake-up alert broadcast system defined in this standard has the following three functional blocks: ??Transmission data generator ??Auxiliary data channel synthesizer ??RF transmitter Among these, the transmission data generator has the following six functional sub-blocks: ??Wake-up alert signal generation and spreading sub-block ??Channel coding and interleaving sub-block ??Modulation sub-block ??Signal spreading sub-block ??Transmission frame multiplexing sub-block ??Pulse shaping sub-block					
관련 IPR 학역서	접수된 IPR 학역서 없음					
관련파일	TTAK.KO-07.0116.pdf					
표준이력	표준명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T-DMB): 자동인지 재난방송 서비스	표준번호 TTAK.KO-07.01 16	제작정일 2013-12-18	구분 제정	유효여부 유효	IPR 학역서 없음

[그림 6-7]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T-DMB): 자동인지 재난방송 서비스’ 표준 정보

자료: TTA 홈페이지⁶⁶⁾

6.1.4.6.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B) 재난경보방송 수신기 표준적합성 시험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B) 재난경보방송 수신기 표준적합성 시험은 TTA에서 제정된 표준으로 지상파 DMB 수신기의 표준적합성 검증에 대해 기술한다. 이 표준의 목적은 지상파 DMB 수신기가 표준에서 제시한 규격에 따라 적합하게 구현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표준을 정의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표준적합성 검증을 위한 시험 환경, 시험 항목, 시험 방법이 있다.

66) TTA 홈페이지(접속일: 2022.11.30.), URL: <https://tta.or.kr/tta/ttaSearchView.do?key=77&searchStandardNo=TTAK.KO-07.0116&searchCategory=TTAS>

표준종류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표준번호	TTAS.KO-07.0055			구 표준번호		
제개정일	2007-12-26			총페이지	33	
한글 표준명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B) 재난경보방송 수신기 표준적합성 시험					
영문 표준명	Receiver Test Procedure for T-DMB Automatic Emergency Alert Service					
한글 내용요약	T-DMB 재난경보방송 수신기의 표준적합성 검증을 위한 시험 환경, 시험 항목, 시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내용요약	This document presents test items, test environments, and test methods for the conformance test.					
관련 IPR 학약서	[학약서 보기]					
관련파일	[TTAS.KO-07.0055.pdf]					
표준이력	표준명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B) 재난경보방 송 수신기 표준적합성 시험	표준번호 TTAS.KO-07.00 55	제개정일 2007-12-26	구분 제정	유효여부 유효	IPR 학약서 [보기]

[그림 6-8]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B) 재난경보방송 수신기 표준적합성 시험’ 표준 정보

자료: TTA 홈페이지⁶⁷⁾

6.1.4.7. 기타

지진 대응을 위한 긴급 재난방송 자막 표출 방법은 TTA에서 제정된 표준으로 지진 발생 정보를 TV에 자막으로 표출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이 표준의 목적은 TV 시청자들이 지진 발생 정보를 쉽게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및 종합편성 채널 방송사가 TV 화면에 자막을 표출하는 방법을 정의하여 권고하는 것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 TV 화면에 표출하는 자막의 색상, 크기 등에 대한 정보가 있다.

67)

TTA 홈페이지(접속일: 2022.11.30.), URL:
<https://tta.or.kr/tta/ttaSearchView.do?key=77&searchStandardNo=TTAS.KO-07.0055&searchCategory=TTAS>

표준종류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표준번호	TTAK.KO-06.0449			구 표준번호		
제개정일	2017-12-13			총페이지	15	
한글 표준명	지진 대응을 위한 긴급 재난방송 자막 표출 방법					
영문 표준명	Display Guidelines of Emergency Disaster Broadcast Subtitle for Coping with Earthquake					
한글 내용요약	이 표준은 지진 발생 시 기상청에서 습득한 지진 발생 정보를 TV 시청자들이 쉽게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자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방송사가 TV 화면에 표출하는 지진 발생 정보를 규정한 것이다. 이 표준에서는 지진 단계별로 TV 화면에 표출하는 자막의 색상과 크기 등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영문 내용요약	The standard specifies the guidelines of earthquake occurrence information that TV broadcasters display on TV screen so that TV viewers can easily recognize and cope with earthquake acquired by meteorological office when earthquake occurs. The standard describes information about the color and size of subtitles displayed on the TV screen by the earthquake phase.					
관련 IPR 확약서	접수된 IPR 확약서 없음					
관련파일	TTAK.KO-06.0449.pdf					
표준이력	표준명	표준번호	제개정일	구분	유효여부	IPR 확약서
	지진 대응을 위한 긴급 재난방송 자막 표출 방법	TTAK.KO-06.04 49	2017-12-13	제정	유효	없음 [파일]

[그림 6-9] ‘지진 대응을 위한 긴급 재난방송 자막 표출 방법’ 표준 정보

자료: TTA 홈페이지⁶⁸⁾

청각장애인용 재난 경보 픽토그램 요구사항 및 표출 규격은 TTA에서 제정된 표준으로 청각장애인의 경보 인지를 위한 픽토그램 이미지에 대해 기술한다. 이 표준의 목적은 청각장애인의 휴대폰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경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것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경보 픽토그램의 도형, 문자, 모션그래픽 사용 방법, 요구사항, 각 종 단말기에서의 표출 방법이 있다.

68) TTA 홈페이지(접속일: 2022.11.30.), URL: <https://tta.or.kr/tta/ttaSearchView.do?key=77&searchStandardNo=TTAK.KO-06.0449&searchCategory=TTAS>

표준종류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표준번호	TTAK.KO-06.0565				구 표준번호	
제작정일	2022-06-29				총페이지	17
한글 표준명	청각장애인용 재난 경보 픽토그램 요구사항 및 표출 규격					
영문 표준명	Requirements and a Display Specification of Disaster Warning Pictogram for the Hearing-impaired					
한글 내용요약	본 표준은 휴대폰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청각장애인들이 경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이미지의 형태와 색상 사용 규격, 휴대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경보 사용 시 진동 사용 방안, 픽토그램 모션그래픽 표출 방법을 정의한다.					
영문 내용요약	This standard defines the format and color standards of pictogram images in smartphones and wearable devices, the method of using vibrations when using warning messages in mobile devices, and the method of display guideline of motion graphics.					
관련 IPR 학약서	접수된 IPR 학약서 없음					
관련파일	TTAK.KO-06.0565.pdf					
표준이력	표준명	표준번호	제작정일	구분	유효여부	IPR 학약서
	청각장애인용 재난 경보 픽토그램 요구사항 및 표출 규격	TTAK.KO-06.0565	2022-06-29	제정	유효	없음

[그림 6-10] ‘청각장애인용 재난 경보 픽토그램 요구사항 및 표출 규격’ 표준 정보
자료: TTA 홈페이지⁶⁹⁾

6.1.5. 재난방송 기술과 표준

지상파 DMB는 국내에서 재난방송 기술이 표준으로 제정된 첫 번째 사례이다. 2005년에 지상파 DMB가 도입되었다. 지상파 DMB를 도입할 때에는 방송 기술이 재난경보를 전달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들어 지상파 DMB 재난경보방송 도입을 위한 연구도 이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상파 DMB 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지상파 DMB 재난경보방송 기술도 표준화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미 지상파 DMB 기술 표준만이 적용된 채 관련 방송 설비가 제작되고 전국에 구축되어 있었다. 뒤늦게 지상파 DMB 재난경보방송 기술을 적용하여 재난방송 신호를 송출하는 테스트를 수행했으나 기존에 구축된 방송 설비와 호환되지 않아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표준화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재난방송 기술의 정착이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69) TTA 홈페이지(접속일: 2022.11.30.), URL: <https://tta.or.kr/tta/ttaSearchView.do?key=77&searchStandardNo=TTAK.KO-06.0565&searchCategory=TTAS>

이와 유사한 문제는 이동통신망 기술이 2G에서 3G로 전환 될 때에도 발생했었다. 2G에는 표준 기술에 CBS(Cell Broadcasting Service)가 재난경보 기술로써 포함되어 있어서 재난문자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3G 표준 기술에는 CBS 기술이 누락되어 재난문자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G에는 CBS 기술이 누락되어 있어서 추후 정부에서 관련 앱을 개발하여 데이터통신으로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G가 도입될 때에는 CBS 기술이 표준에 포함되어 재난문자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디지털포용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용 TV를 보급하여 재난방송을 제공하는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용 TV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화면해설 기능

- TV 설정메뉴
- TV 편성표,
- 음성 속도, 높낮이, 배경음 조절 등 선택 기능
- 저시력장애인용 화면 확대 및 고대비 기능

○ 자막방송

- 자유로운 자막 위치 변경 기능
- 폐쇄자막과 방송영상 분리 기능(상하단)
- 자막크기 5단계 조절, 배경색 및 글자색 변경 기능(각 8종)

○ 수어 방송

- 수어방송 크기 3단계 확대(최대 200%)
- 수어방송과 방송영상 분리 기능

하지만 아직 장애인용 TV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표준은 없다. 현재는 시범서비스 단계이지만 향후 장애인을 위한 재난방송 기술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능이 표준으로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 서술한 지상파 DMB와 3G CBS의 사례처럼 표준화가 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재난방송 기술의 안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 6.1.4 재난방송 기술 표준 현황을 보면 방송 기술 외에도 재난방송 서비스를 위해 표출 방식이나 문구에 대한 표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표출 방식에 대한 표준을 방송사와 TV 및 방송기기 제조업체에서 참조할 수 있다면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표준화는 꼭 필요하다.

제2절 전문인 양성과 국제교류

6.2.1. 재난방송의 전문화를 전문인 양성

재난방송 전문인 양성에 관련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6.2.1.1. 재난방송 연구센터의 설립

재난방송 선진화 내지는 전문화를 위해서는 재난방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센터 설립이 시급하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⁷⁰⁾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진흥을 위하여 재난방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재난정책연구원 및 센터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동 연구센터는 재난정책에 관한 연구 및 재난방송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과 정책, 콘텐츠제작 및 기술개발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대응방안 등을 연구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⁷¹⁾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재난방송 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70) 제18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제19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1.2. 재난방송에 관한 전문 인력지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6조⁷²⁾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방송 같은 구가적인 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으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FCC나 일본의 총무성의 경우는 개별 방송사의 재난피해를 지원하여 재난대응 시스템을 한 층 강화하고 있다

6.2.2. 재난방송 전문인 양성을 위한 연수제도 시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⁷³⁾에

72) 제16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73) 제21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 1) 수요 실태 및 중·장기 수급 전망 파악
 - 2)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 4)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5)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2.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위성방송, DMB,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재난방송 의무채널 편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경학 및 연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등 재난방송 의무채널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방송 프로그램제작 지원 및 우수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 및 지원을 해야 한다.
3. 재난방송 및 재난방송서비스와 관련된 재난방송 전문 인력의 수요 및 실태파악 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사전에 파악해 능동적으로 대처
3. 해외파견이나 견학 등 재난방송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
4. 재난방송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5. 재난방송통신기술 개발 및 표준화 등 자격제도의 정착과 인력지원
6.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재난방송 및 재난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7. 일반 국민에 대한 재난방송 및 재난경방송서비스 관련한 교육과 홍보
8. 그 밖에 재난방송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6.2.3. 재난방송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의 노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제1항⁷⁴⁾에 따라 정부는 재난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과 유통, 재난방송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적

육의 지원

7. 일반국민에 대한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확대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74) 제23조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등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도 국제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뿐만 아니라, 재난방송 분야에도 국제적인 동향파악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진이나 메세먼지, 원전폭발, 감염병이 만연 등 팬데믹 시대에는 균린제국의 국제협력이 필수조건이다. 특히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 필리핀 등 인근 국가와의 서로 공조 없이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과제여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인근 국가와는 재난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동 조사나 세미나 개최 및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다자구조에서 행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원자력 안전문제나 지진 등 자연재난의 경우는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6.2.4. 남북 간 재난방송통신 정보의 교류와 협력 필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⁷⁵⁾에 의해 남북 간 재난방송통신의 정보 교류와 함께

75) 제2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력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남북 간 재난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재난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재난방송통신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대해서 공종조사·연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의 공동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북 간 재난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재난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두고 교류할 수 있다.

제7장 재난방송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⁷⁶⁾

이 장에서는 재난방송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는 재난방송 법률안의 구성요소를 서술하고, 제2절에서는 재난방송 법률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재난방송에 관한 특별법(안) 및 법과 관련된 시행령과 고시를 제시한다.

제1절 재난방송 법률안의 구성요소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내에 일부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던 재난방송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할 필요성을 반영하여, 가칭 「재난방송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특별법의 형식을 고려하여, 제1장 총칙은 법률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재난방송의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공공성과 공익성, 재난방송 업무의 총괄 및 조정 주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모두 5개 조항으로 구성해 보았다.

제2장은 재난방송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재난방송준칙의 제정 관련 내용, 재난방송의 의무 대상과 준수사항, 실시기준, 재난방송의 관리방안, 그리고 재난방송주관방송사에 관한 내용 등 모두 6개 조항으로 구성해 보았다.

제3장은 방송재난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부터 제39조의2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포함 시키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수립절차, 방송재난관리계획의 이행, 방송재난의 대비 및 보고, 방송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6개 조항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제4장은 재난방송 관리기구와 그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중앙/지역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근거를 비롯해 협의회 산하에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사항 등 3개 조항을 제시하고자 했다.

76) 이 법안은 법학과 교수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되었다.

제5장은 재난방송에 관한 기술적 조치 사항으로, 재난방송 수신시설의 설치와 재난방송의 송출 및 운영, 재난방송의 기술적 고도화와 이를 위한 진흥정책, 그리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내용 등 4개 조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칙 조항에서는 재난방송과 국제협력, 재난방송과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했고, 별칙 조항에서 과태료 처분 대상과 기준 등을 포함하였다. 전체적으로 재난방송에 관한 특별법은 7개 장과 27개 조항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제2절 재난방송 법률안의 세부내용

가칭 「재난방송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법안의 목적을 명시하도록 했는데, 재난방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신속한 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7-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방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방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정의조항으로, 재난과 재해, 방송, 방송사업자 등 타 법률에서 정의된 사항을 명시하였고, 재난정보, 재난방송, 재난방송등⁷⁷⁾ 등 재난방송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정보, 방송재난, 재난취약계층, 재난주관방송사,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등에 관한 정의를 다루고 있다.

<표 7-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말한다.
 4.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5. “재난정보”란 재난·재해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6. “재난방송”이란 재난·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편성하여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특보·속보 형식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7. “재난방송등”이란 제6호의 재난방송과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에 관한 민방위경보방송을 말한다.
-

77) 재난방송등은 재난방송과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경보방송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
8. “재난동영상” 이란 재난 등의 관련 정보, 행동수칙·요령 등에 대하여 미리 제작한 동영상을 말한다.
 9. “재난오디오”란 재난 등의 관련 정보, 행동수칙·요령 등에 대하여 미리 제작한 오디오를 말한다.
 10. “중요 핵심정보”란 재난 등의 명칭, 발생시각, 발생지역, 예·경보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방송재난”이란 재난, 재해, 민방위사태 및 그 밖의 이유로 발생하는 방송서비스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말한다.
 12. “재난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외국인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3. “재난주관방송사”란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된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14.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란 법 제7조제1항의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15. “시민안전통신원”이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재난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재난주관방송사,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반 국민을 말한다.
 16. “재난전문채널”이란 재난관련 정보, 기상정보 및 감염병 등에 관한 심층정보를 24시간 제공하는 방송채널을 말한다.
-

제3조는 재난방송등의 공공성과 재난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임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특히 재난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의 수립과 시행 의무를 부여하고자 했다.

<표 7-3> 제3조(재난방송등의 공공성과 재난취약계층의 권리보호)

-
- 제3조(재난방송등의 공공성과 권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취약계층이 재난정보 공유에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재난방송등의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방송등 업무의 총괄 · 조정)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표 7-4> 제4조(재난방송등 업무의 총괄 · 조정)

제4조(재난방송등 업무의 총괄 ·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 방송등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 · 조정한다.

<표 7-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방송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는 재난방송준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준칙을 제정 · 공시하도록 하고,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는 준칙에 따라 재난방송 종합지침서(매뉴얼)를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했다.

<표 7-6> 제6조(재난방송준칙의 제정)

제6조(재난방송준칙의 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방송등에 필요한 “재난방송준칙”을 제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의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는 제1항의 준칙에 따라 “재난방송 종합지침서(매뉴얼)”을 제정하여 재난방송에 대응하여야 한다.
③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는 “재난방송 종합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는 재난방송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를 지정하였고,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표 7-7> 제7조(재난방송등의 의무)

제7조(재난방송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 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막방송의 형식으로 재난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는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특히 피해자와 피해지역 중심의 재난방송이 되도록 노력하여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였다.

<표 7-8> 제8조(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제8조(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 ② 재난방송 의무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피해지역 중심의 재난방송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향에 있어 보도의 기능, 방재의 기능, 복구·부흥의 기능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균형 있게 반영한 방송을 통해 그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

<표 7-9> 제8조의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
-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정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5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는 재난방송 실시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의 유형과 발생시기, 상황변화,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특보와 동영상, 오디오, 자막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반영하고자 했다. 그 외 재난방송 의무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실시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원칙 등을 포함하고자 했다.

<표 7-10> 제9조(재난방송등의 실시기준)

-
- 제9조(재난방송등의 실시기준) ①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재난방송 의무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 방송내용, 재난 등의 상황변화 및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방송등의 실시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특보
 2. 재난동영상
 3. 재난오디오
-

-
- 4. 자막
 - 5. 그래픽
 - 6. 음성
 - 7. 음향
 - 8. 그 밖에 재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에게 재난방송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요청받기 전에 동일한 재난방송등을 이미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재난유형에 따른 중요 핵심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재난상황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동일·유사한 재난방송등을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다수의 재난방송등에 대하여 통합하거나 변경된 내용 위주로 조정하여 재난방송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⑦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지진 규모 5.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재난방송등이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
 - 2. 재난방송등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 3.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 경보음을 송출할 것
 - 4. 해당 재난 등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 해당 재난 등의 명칭, 해당 재난 등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 재난방송등을 실시할 것
- ⑧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기상법」에 따른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기상상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등을 방송하여야 한다.
- ⑨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재난방송등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주관방송사는 이를 신속하게 방송하여야 한다.
-

<표 7-11> 제9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재난방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상황 등에 관한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자막의 형태로 송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에 관한 경보발령기관, 경보유형, 발생지역 및 시간정보를 자막으로 화면에 송출할 것
2. 제1호의 자막이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방송시간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51조·제52조의2·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의 재난방송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해당 방송사업자는 매뉴얼의 작성과 그에 따른 교육의 실시 사항을 명시하였다.

<표 7-12> 제10조(재난방송등의 관리)

제10조(재난방송등의 관리)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7-13> 제10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4항 이하)

제40조(재난방송 등)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5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는 재난주관방송사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방송공사 외에 전국적인 취재망과 방송망을 갖춘 복수의 방송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주관방송사가 취해야 하는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고자 했다.

<표 7-14> 제11조(재난주관방송사)

제11조(재난주관방송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다만, 대형 재난 등에 대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한 복수의 방송사업자를 재난주관방

송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 복수의 재난주관방송사는 방송사업자의 지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③ 재난주관방송사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취재망과 방송망을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TV와 라디오 등으로 신속하게 재난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④ 재난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재난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재난방송 등을 위한 전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전담 부서의 구성과 함께 재난방송 관련 첨단 장비 및 재난방송 관련 기술적 지원 기반구축 등의 마련
 -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시스템의 구축
 - 3. 정기적인 사내 재난방송 관련 전문교육과 모의훈련, 세미나 등을 실시해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비
 - 4. 매년 재난방송 운용 계획을 작성하여 시청자들이 사전에 잘 알 수 있도록 공지
 -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도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주관방송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재난방송등의 실시를 위해 재난주관방송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표 7-15> 제11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

-
-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 2.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 3.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재난방송 관리기구의 구성과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와 협의하여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 상황실 등, 재난방송 예·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재난방송과 방송재난의 안전관리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표 7-16>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
-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 등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신속한 재난방송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표 7-17> 제13조(중앙재난방송협의회 대책본부)

-
- 제13조(중앙재난방송협의회 대책본부) ① 대규모 재난 등 발생시 대응·복구 등에 관한 재난방송등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산하에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대책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대책본부 실무 책임자로 차장을 둘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담당 실·국장이 담당하도록 한다.
⑤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

<표 7-18> 제14조(지역재난방송협의회 지역대책본부)

제14조(지역재난방송협의회 지역대책본부) 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에 관한 재난방송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산하에 지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지역대책본부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으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지역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표 7-19> 제15조(재난방송 상황실 등)

제15조(재난방송 상황실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운영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하여 재난방송 실시상황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재난주관방송사 및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와도 신속하게 재난방송 업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재난주관방송사 및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는 재난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초동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난방송 상황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관련 부서나 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 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표 7-20> 제15조 참조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표 7-21> 제16조(재난방송 예·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제16조(재난방송 예·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재난방송책임기관”이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방송 예·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된 위험정보를 얻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주관방송사,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방송책임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표 7-22> 제16조 참조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⑨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⑩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⑪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 ⑫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 7-23> 제17조(재난방송과 방송재난의 안전관리 및 예산지원 사전협의 등)

제17조(재난방송과 방송재난의 안전관리 및 예산지원 사전협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방송과 방송재난 및 재난안전관리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방송과 방송재난 및 재난안전관리 사업에 필요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관리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검토 결과

4. 그 밖에 재난방송과 방송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의 안전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표 7-24> 제17조 참조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 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증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

<표 7-25> 제18조(재난방송과 방송재난의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제18조(재난방송과 방송재난의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담당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의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7-26> 제18조 참조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 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7-27>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방송과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방송과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역의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지역의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3. 지역의 재난방송 취약 지역 · 시설 등의 재난방송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4. 재난방송 및 재난안전 관련 교육 · 훈련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7-28> 제19조 참조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 · 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 · 군 · 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3. 재난취약 지역 · 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4. 재난안전 관련 교육 · 훈련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방송재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방송재난은 재난이나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송시설 등의 물리적 결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당 방송사업자는 기본계획에 입각한 자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7-29> 제20조(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이하 “주요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재난, 재해, 민방위사태 및 그 밖의 이유로 인한 방송서비스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
 2.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정)
- ②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 가. 우회 방송 경로의 확보
 - 나. 방송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 라. 그 밖에 방송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표 7-30> 제20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
-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합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 및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 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표 7-31> 제21조(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21조(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사업자가 제출한 방송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7-32> 제21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 7-33> 제22조(방송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22조(방송재난관리계획의 이행) ① 주요방송사업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방송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송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 7-34> 제22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

-
-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 7-35> 제23조(방송재난의 대비)

-
- 제23조(방송재난의 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설비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설비 또는 방송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설비(이하 “자가방송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방송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자가방송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설비가 방송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 7-36> 제23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7조)

-
- 제37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 7-37> 제24조(방송재난의 보고)

제24조(방송재난의 보고) 주요방송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서비스에 관하여 방송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7-38> 제24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8조)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표 7-39> 제25조(방송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25조(방송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주요방송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방송재난관리계획 수립·변경, 제14조에 따른 방송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15조에 다른 방송재난의 대비 및 제16조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방송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7-40> 제25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9조의2)

제39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및 제38조·제39조제4항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과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부터 제29조는 재난방송에 대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재난방송 수신시설의 설치 기준과, 송출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특히 재난방송의 기술적 고도화를 위한 진흥정책과 관련 기술 표준화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

<표 7-41> 제26조(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26조(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 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표 7-42> 제26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표 7-43> 제27조(재난방송등의 송출 및 운용 등)

제27조(재난방송등의 송출 및 운용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등을 통해 재난정보 모니터링 및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해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기상청 등에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해 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시스템을 통해 재난주관방송사 및 재난방송 의무대상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재난방송 요청문을 전송해 실시 간 재난방송이 송출되도록 운용 하여야 한다.

<표 7-44> 제28조(재난방송등의 기술적 고도화와 진흥정책)

제28조(재난방송등의 기술적 고도화와 진흥정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의 기술적 고도화로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이 안심·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기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에 관련된 국제적인 선진 기술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재난방송등에 관한 기술협력 및 기술지도,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재난방송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재난방송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기술정보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신기술의 진흥책에 관한 사항

<표 7-45> 제29조(재난방송등의 표준화)

제29조(재난방송등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등의 발전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방송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 기자재 생산업체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이 제정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는 재난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재난방송 연구기관 및 연구 단체, 방송재난 피해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재난전문채널, 온라인 재난정보 제공, 재난방송 종합계획 수립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표 7-46> 제30조(재난방송 연구기관의 설립 및 연구 단체의 지원)

제30조(재난방송 연구기관의 설립 및 연구 단체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진흥을 위하여 재난방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재난정책연구원 또는 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한 재난정책연구원 또는 연구센터에는 재난방송 지원에 필수적인 재난방송에 관한 이론과 정책, 콘텐츠 제작 및 기술개발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대응방안 등을 연구 개발하여 활용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재난방송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연구 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7-47> 제30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8조)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7-48> 제31조(방송재난에 관한 피해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제31조(방송재난에 관한 피해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형재난으로 인해 물리적·기술적 기반피해를 입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에 대해 피해구제 및 복구를 위해 송수신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 실태 및 중·장기 수급 전망 평가
2.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 재난방송기술 자격제도, 표준화 등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
- 6. 시민안전통신원 빨굴, 육성,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7.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재난방송 기술 및 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 8. 일반국민에 대한 재난방송 기술 및 서비스 홍보 및 관련 교육의 확대
 - 9.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 ④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해 시민안전통신원을 모집, 선발, 교육, 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표 7-49> 제31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1조)

-
-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 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 실태 및 중·장기 수급 전망 파악
 - 2.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 4.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5.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 6.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 7. 일반국민에 대한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확대
 -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

<표 7-50> 제32조(재난전문채널의 운영)

-
- 제32조(재난전문채널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주관방송사에 재난전문채널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전문채널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기술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

<표 7-51> 제33조(온라인 재난정보 제공)

-
- 제33조(온라인 재난정보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 7-52> 제34조(재난방송 종합계획의 수립)

제34조(재난방송 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 방송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한 “재난방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는 재난 발생의 원인과 확산이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국제적인 협력관계와 남북 간의 협력관계에 힘써야 한다는 것과 자료의 제출 원칙을 포함하였다.

<표 7-53> 제35조(재난방송과 국제협력)

제35조(재난방송과 국제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의 분야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파악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표 7-54> 제36조(재난방송과 남북협력)

제36조(재난방송과 남북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재난 방송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표 7-55> 제37조(자료의 제출)

제37조(자료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표 7-56> 제37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2조)

제42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8조는 과태료 관련 내용으로 방송사업의 형태나 매출규모, 제작능력 등을 고려해 위반 사업자별로 경감해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자 했다.

<표 7-57> 제38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송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4조에 따른 방송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제2항제1호에서 재난방송등을 미실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방송사업의 형태나 매출규모, 종업원 수, 재난방송등의 제작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감해 부과할 수 있으며, 경감기준은 고시를 통해 공표하도록 한다.

<표 7-58> 제38조 참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8조)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
-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3.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 4.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6.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7.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7의2.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8.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9.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제3절 재난방송에 관한 특별법(안)

7.3.1.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방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방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말한다.
4.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5. “재난정보”란 재난·재해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6. “재난방송”이란 재난·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편성하여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특보·속보 형식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7. “재난방송등”이란 제6호의 재난방송과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에 관한 민방위경보방송을 말한다.
8. “재난동영상”이란 재난 등의 관련 정보, 행동수칙·요령 등에 대하여 미리 제작한 동영상을 말한다.
9. “재난오디오”란 재난 등의 관련 정보, 행동수칙·요령 등에 대하여 미리 제작한 오디오를 말한다.
10. “중요 핵심정보”란 재난 등의 명칭, 발생시각, 발생지역, 예·경보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방송재난” 이란 재난, 재해, 민방위사태 및 그 밖의 이유로 발생하는 방송서비스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말한다.
12. “재난취약계층” 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외국인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3. “재난주관방송사”란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된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14.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란 법 제7조제1항의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15. “시민안전통신원”이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재난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재난주관방송사,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반 국민을 말한다.
16. “재난전문채널”이란 재난관련 정보, 기상정보 및 감염병 등에 관한 심층정보를 24시간 제공하는 방송채널을 말한다.

제3조(재난방송등의 공공성과 재난취약계층의 권리보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취약계층이 재난정보 공유에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재난방송등의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방송등 업무의 총괄·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방송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관리

- 제6조(재난방송준칙의 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방송등에 필요한 “재난방송준칙”을 제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7조제1항의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는 제1항의 준칙에 따라 “재난방송 종합지침서(매뉴얼)”을 제정하여 재난방송에 대응하여야 한다.
- ③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는 “재난방송 종합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재난방송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막방송의 형식으로 재난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 ② 재난방송 의무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피해지역 중심의 재난방송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함에 있어 보도의 기능, 방재의 기능, 복구·부흥의 기능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균형 있게 반영한 방송을 통해 그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제9조(재난방송등의 실시기준) ①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난방송 의무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 방송내용, 재난 등의 상황변화 및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방송등의 실시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특보
2. 재난동영상
3. 재난오디오
4. 자막
5. 그래픽
6. 음성
7. 음향
8. 그 밖에 재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에게 재난방송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자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요청받기 전에 동일한 재난방송등을 이미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재난유형에 따른 중요 핵심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재난상황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동일·유사한 재난방송등을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다수의 재난방송등에 대하여 통합하거나 변경된 내용 위주로 조정하여 재난방송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지진 규모 5.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이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

2. 재난방송등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 경보음을 송출할 것
4. 해당 재난 등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 해당 재난 등의 명칭, 해당 재난 등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 재난방송등을 실시할 것
⑧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기상법」에 따른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기상상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등을 방송하여야 한다.
⑨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재난방송등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주관방송사는 이를 신속하게 방송하여야 한다.

- 제10조(재난방송등의 관리)**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재난주관방송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다만, 대형 재난 등에 대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한 복수의 방송사업자를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 복수의 재난주관방송사는 방송사업자의 지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③ 재난주관방송사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취재망과 방송망을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TV와 라디오 등으로 신속하게 재난방송등을 실시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④ 재난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재난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 등을 위한 전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전담 부서의 구성과 함께 재난방송 관련 첨단 장비 및 재난방송 관련 기술적 지원 기반구축 등의 마련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시스템의 구축
 3. 정기적인 사내 재난방송 관련 전문교육과 모의훈련, 세미나 등을 실시해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비
 4. 매년 재난방송 운용 계획을 작성하여 시청자들이 사전에 잘 알 수 있도록 공지
-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도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주관방송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재난방송등의 실시를 위해 재난주관방송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재난방송 관리기구의 구성과 사업관리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 등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신속한 재난방송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중앙재난방송협의회 대책본부) ① 대규모 재난 등 발생시 대응·복구 등에 관한 재난방송등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산하에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대책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 실무 책임자로 차장을 둘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담당 실·국장이 담당하도록 한다.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재난방송협의회 지역대책본부) 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에 관한 재난방송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산하에 지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지역대책본부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으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지역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재난방송 상황실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운영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하여 재난방송 실시상황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재난주관방송사 및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와도 신속하게 재난방송 업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재난주관방송사 및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는 재난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초동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난방송 상황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관련 부서나 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방송 예·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재난방송책임기관”이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방송 예·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된 위험정보를 얻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주관방송사,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방송책임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재난방송과 방송재난의 안전관리 및 예산지원 사전협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방송과 방송재난 및 재난안전관리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방송과 방송재난 및 재난안전관리 사업에 필요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관리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 2.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 3.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증복성 검토 결과
 - 4.그 밖에 재난방송과 방송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의 안전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방송과 방송재난의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담당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의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방송과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항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역의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지역의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3. 지역의 재난방송 취약 지역·시설 등의 재난방송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4. 재난방송 및 재난안전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방송재난의 관리

제20조(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이하 “주요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재난, 재해, 민방위사태 및 그 밖의
이유로 인한 방송서비스의 불리적, 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
 2.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정)
- ②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우회 방송 경로의 확보
 - 나. 방송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 라. 그 밖에 방송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사업자가 제출한 방송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방송재난관리계획의 이행) ① 주요방송사업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방송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송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방송재난의 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설비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설비 또는 방송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설비(이하 “자가방송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방송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자가방송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설비가 방송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방송재난의 보고) 주요방송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서비스에 관하여 방송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방송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주요방송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방송재난관리계획 수립·변경, 제14조에 따른 방송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15조에 다른 방송재난의 대비 및 제16조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방송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재난방송등에 관한 기술적 조치

제26조(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 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7조(재난방송등의 송출 및 운용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등을 통해 재난정보 모니터링 및 상시연락체제를 유지해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기상청 등에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해 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시스템을 통해 재난주관방송사 및 재난방송 의무대상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재난방송 요청문을 전송해 실시 간 재난방송이 송출되도록 운용 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방송등의 기술적 고도화와 진흥정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의 기술적 고도화로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이 안심·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기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에 관련된 국제적인 선진 기술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재난방송등에 관한 기술협력 및 기술지도,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재난방송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재난방송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기술정보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신기술의 진흥책에 관한 사항

제29조(재난방송등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의 발전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방송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 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이 제정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재난방송등의 발전을 위한 지원

제30조(재난방송 연구기관의 설립 및 연구 단체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진흥을 위하여 재난방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재난정책연구원 또는 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한 재난정책연구원 또는 연구센터에는 재난방송 지원에 필수적인 재난방송에 관한 이론과 정책, 콘텐츠 제작 및 기술개발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대응방안 등을 연구 개발하여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재난방송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연구 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방송재난에 관한 피해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형재난으로 인해 물리적·기술적 기반피해를 입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에 대해 피해구제 및 복구를 위해 송수신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 실태 및 중 · 장기 수급 전망 파악

2.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 재난방송기술 자격제도, 표준화 등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6. 시민안전통신원 발굴, 육성,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재난방송 기술 및 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8. 일반국민에 대한 재난방송 기술 및 서비스 홍보 및 관련 교육의 확대

9.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④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해 시민안전통신원을 모집, 선발, 교육, 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전문채널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주관방송사에 재난전문채널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전문채널 운영에 필요한 인적 · 물적 · 기술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온라인 재난정보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재난방송 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한 “재난방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재난방송과 국제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의 분야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파악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재난방송과 남북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재난방송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자료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38조(과태료)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송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4조에 따른 방송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재난방송등을 미실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방송사업의 형태나 매출규모, 종업원 수, 재난방송등의 제작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감해 부과할 수 있으며, 경감기준은 고시를 통해 공표하도록 한다.

7.3.2.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방송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 제2조제10호에서 말하는 “중요 핵심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난의 명칭
2. 재난 발생시각
3. 재난 발생지역
4. 재난 예보 및 경보 현황
5.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6. 그 밖에 재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재난방송준칙의 제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에 필요한 “재난방송준칙”을 제정·공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방송준칙”은 재난방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의 실시 체계
2. 재난방송의 실시 주체
3. 재난방송의 요정
4. 재난방송시 유의사항
5. 재난방송관련 각 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6. 재난 유형 및 단계별 재난방송 실시 기준
7. 재난방송 실시 결과 평가 방법

제4조(재난방송등의 보고)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방송등의 “중요 핵심정보” 포함 여부
2. 재난방송등의 내용
3. 재난방송등의 실시 시각 및 횟수
4. 재난방송준칙에 따른 실시 현황

제5조(재난방송등의 관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사업자별 재난방송등의 실시 시각 및 횟수
2. 방송사업자별 재난방송등의 “중요 핵심정보” 포함 여부
3. 방송사업자별 “재난방송준칙” 반영 여부

제6조(재난주관방송사의 역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난주관방송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
2.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3.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재난방송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
4. 재난 예방을 위한 콘텐츠의 제작 및 공급
5. 재난관련 인터넷동영상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6. 재난방송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7. 시민안전통신원의 모집, 선발, 운영, 교육, 지원 방안 마련

제7조(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8조(중앙재난방송협의회 대책본부의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방송재난 복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주요방송사업자의 소속직원으로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대책본부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재난방송과 방송재난 안전관리 사업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방송재난 안전관리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이하 “성과목표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서 제5항에서 정하는 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방송재난관리계획의 수정 및 변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제11조(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 이행의 지도·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송사업자의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그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한 지도·점검계획을 주요 방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지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요방송사업자에게 방송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방송설비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방송설비의 통합 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방송설비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 및 방송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설비(이하 “방자가방송설비”라 한다)의 보유자에게 각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하는 조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자가방송설비 보유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하는 조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조치

- ② 방송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송설비의 통합 운용이 필요한 경우 다른 방송사업자 또는 자가방송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 또는 자가방송설비의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방송설비의 통합 운용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따라 방송사업자 또는 자가방송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설비의 통합 운용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방송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주요방송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장을 방송재난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방송재난 업무와의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중에서 방송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재난방송등의 표준화 대상 및 절차)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표준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재난방송 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방송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2. 재난방송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재난방송관련 기술 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4. 그 밖의 재난방송 기술 및 서비스 관련 전담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방송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2. 재난방송 관련 교육·훈련비용 지원
3. 재난방송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4. 재난방송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활동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온라인 재난정보의 제공)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재난정보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재난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
2. 온라인 재난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3. 온라인 재난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운영 지원
4. 온라인 재난정보 제공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제17조(재난방송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 현황 평가와 성과
2. 재난방송 접근성 및 전달체계 강화
3.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 강화 방안

4. 재난방송 지원 방안
5. 재난방송 관리체계 개선 방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제18조(자료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 본문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여야 한다. 방송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3.3. 고시

재난방송등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난방송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재난방송등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특보”란 재난방송등을 위해 특별히 편성하여 보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정규 및 비정규 편성, 각 방송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그 일부분에 편성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2. “재난동영상”이란 재난 등의 관련 정보, 행동수칙·요령 등에 대하여 미리 제작한 동영상을 말한다.
3. “재난오디오”란 재난 등의 관련 정보, 행동수칙·요령 등에 대하여 미리 제작한 오디오를 말한다.
4. “중요 핵심정보”란 재난 등의 명칭, 발생시각, 발생지역, 예·경보 상황 및 발령기관, 행동요령 등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방송등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제4조(재난방송등의 대상) 재난방송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재난방송등의 준칙) ①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별표1의 시기, 방송내용, 재난등의 상황변화 및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방송등의 실시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재난특보
2. 재난동영상
3. 재난오디오
4. 자막
5. 그래픽
6. 음성
7. 음향
8. 그 밖에 재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등을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요청받기 전에 동일한 재난방송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재난 등의 유형별 중요 핵심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재난상황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동일·유사한 재난방송등을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다수의 재난방송등에 대하여 통합하거나 변경된 내용 위주로 조정하여 재난방송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⑦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지진 규모 5.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이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
 2. 재난방송등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 경보음을 송출할 것
 4. 해당 재난 등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 해당 재난 등의 명칭, 해당 재난 등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 재난방송등을 실시할 것
- ⑧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기상법에 따른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기상상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등을 방송하여야 한다.
- ⑨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재난방송등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는 신속하게 방송하여야 한다.

제6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사업자가 사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무분별하게 촬영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터뷰를 강요하는 행위

2. 장시간의 인터뷰를 하는 행위

3.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행위

4. 기타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7조(취재질서 유지) ①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위해 취재를 할 경우에는 인명구조와 재난 등의 수습 및 복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된 현장에서의 카메라 설치, 관계자 인터뷰 등 필요한 사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취재인력 보호)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의 현장에 취재진을 파견할 경우에는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취재직원의 안전에 힘써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7-59> <별표1> 재난방송등의 실시형식 결정 시 고려사항 예시

시기	방송내용	상황변화	실시형식
재난 발생 전 (예방방송)	기상, 환경, 주변 상황 등 변화 양상	급격	재난특보
		완만	재난특보
			정보제공프로그램
	재난특성,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급격/ 완만	재난동영상 (재난오디오)
재난 발생 직후 (신속방송)	재난 발생 상황, 피해 상황, 추가피해예방 및 피해복구 행동요령 등	급격/ 완만	재난특보
			자막
재난 발생 초기 (단기지속)	진행경과, 피해 상황 등 추가피해예방 및 피해복구 행동요령 등	급격/ 완만	재난특보
		급격	재난특보
		완만	재난특보
			재난동영상 (재난오디오)
재난 장기 지속	진행경과, 피해 상황 등	급격	재난특보
		완만	재난특보
			정보제공프로그램
	추가피해예방 및 피해복구 행동요령 등	급격	재난특보
		완만	재난특보
			재난동영상 (재난오디오)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안

이상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 중 중점적으로 제안한 「재난방송에 관한 특별법」은 만시지탄은 있지만, 10·29참사 등 대형 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중요한 제안으로 본다.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정책을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안에 따라 본 연구팀들은 수차례에 회의와 조언, 수정 등을 거듭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재난관련 법률들을 대형 홍수피해를 계기로 1988년 11월에 스탠퍼드 의원(Robert T. Stafford)에 의해 발의된 스탠퍼드법이 오늘날의 재난법의 모태가 되었다. 물론, 그동안 2001년 9·11 테러, 2005년 뉴 오리언스 허리케인 카트나 등을 거치면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시스템인 IPAWS에 이르기 까지 법적, 제도적으로 수정해 점점 보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지진이나 홍수 등을 겪으면서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재난관련 법률들을 수렴하여 1961년에 「재해대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95년 고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보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2004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시스템인 「J- Alert」를 개발하는 등 점점 신속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재난방송에 관한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안대로 1차적으로는 국내 재난관련 법률인 헌법이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기상법」, 「자연재해 대책법」, 「지진·화산 대책법」, 「소방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림보호법」, 「민방위 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재난관련 조항들을 참조하였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형태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관련법규의 인용 법률과 제정제안 배경 등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도 이 법 초안을 기본으로 가필정정 등을 거치면서 하루빨리 정식으로 입법이 되고 미국·일본과 같이 신속한 재난정보전달시스템인 K- Alert 같은 것이

탄생되어 제2의 10·29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 밖에도 효율적인 재난방송 및 재난방송협의회 구축, 재난방송 관련 기술의 고도화, 재난방송 평가방법 및 과태료 부과 합리성 제고, 재난방송 선진화를 위한 전문인 양성과 국제교류 등도 제안하였다.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방송의 중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방송 매체가 효과적으로 재난정보를 국민 모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정부와 방송사, 학계 등의 이러한 고민은 법률 제정을 통해 명확한 지침을 공유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하고자 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특별법을 보다 정교하게 고도화하고, 국회와 정부, 학계와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법률안에 대한 시행령과 고시의 제정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재난방송준칙 제정과 함께 새로운 재난방송 매뉴얼 개정과 후속하는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20),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민방위경보 전달 체계 개선방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민안전처(2016), 『지능·맞춤형 통합경보시스템 연구 개발』, 국민안전처.

기상청(2022), 『2021년 이상기후 보고서』, 기상청.

남창희·이종성(2010),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세종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2019.12.27.), 재난방송 등 표준 매뉴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2020.01.), 2020년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2021.08.),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URL: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51805&mode=view>

방송통신위원회(2021.12.28.),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21.12.21)에 따른 방송평가 세부기준, URL: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20000&dc=K05020000&boardId=1112&cp=1&searchKey=ALL&searchVal=%EB%B0%A9%EC%86%A1%ED%8F%89%EA%B0%80&boardSeq=52380>

이연(2016a), 『일본의 방송과 방송문화사』, 학문사.

이연(2016b), 『국가위기관리와 재난정보』, 박영사.

이연(2022a), 『국가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 박영사.

이연(2022b), 국가위기관리와 재난방송, 방재저널, 24권 1호, 16.

최성종·강상혁(2006), 『DMB를 활용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방안』, 소방방재청.

최성종·이연·장석진·송종현·권대복·안소영(2015),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한 정책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종·이연·변윤관(2017), 『지상파 UHD 방송 도입에 따른 전파 이용

효율화 방안 및 재난방송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성종 · 이연 · 변윤관 · 안연주(2018), 『지상파 UHD 방송을 활용한 재난방송 고도화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성종 · 장석진 · 이연 · 이현지 · 변윤관(2020), 『국민 맞춤형 재난방송 실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2022a), 『2021 재해연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2022b), 『2021 재난연감』, 행정안전부.

국외 문헌

内閣府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접속일: 2022.12.16),
<재해대책기본법의 개요>, URL:
https://www.bousai.go.jp/taisaku/kihonhou/pdf/kihonhou_gaiyou.pdf
林春夫(2015), 「災害をうまくのりきるために」 「防災学講座 第4巻
防災計画論」, 京都大学防災研究所編.
水島宏明(上智大学教授)(2020.02.25.), TBS <NEWS23>, URL: (이연교수님 출처)

홈페이지

통계청(접속일: 2022.12.20.), URL: https://kosis.kr/covid/statistics_excessdeath.do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접속일: 2022.11.30.), URL:
https://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0
한국정보통신협회 홈페이지(접속일: 2022.11.30.), URL: <https://www.tta.or.kr/>
한국정보통신협회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접속일: 2022.11.30.), URL:
<http://committee.tta.or.kr/>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접속일: 2022.11.30.), URL:
<https://www.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FEMA 홈페이지(접속일 2022.10.16.), URL:

https://www.fema.gov/sites/default/files/2020-11/fema_ipaws-infographic_photo_11-17-2020.jpg

FMMC 홈페이지(접속일: 2022.10.16.), URL: <https://www.fmmc.or.jp/commons/merit/3-2.html>

内閣府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홈페이지(접속일: 2022.09.01),
URL: https://www.bousai.go.jp/taisaku/kihonhou/pdf/kihonhou_gaiyou.pdf

법률

국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내 「기상법」

국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내 「민방위 기본법」

국내 「방송법」

국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내 「산림보호법」

국내 「소방 기본법」

국내 「자연재해 대책법」

국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내 「지진 · 화산재해 대책 법」

국내 「헌법」

일본 「재해대책기본법」

저 자 소 개

송 종 현	이 현 지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 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통합석박사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	
· 현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 연	변 윤 관
· 죠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석사
· 죠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박사수료
· 현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최 성 종	
· 서울대학교 전자과 석사	
· 플로리다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	
· 현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2-12

재난방송 관련 법·제도 재정비 방안 연구

2022년 12월 31일 인쇄

202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
